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의견청원서

발행일 2024. 8. 14.

- 24대 의혹 및 관계자 134명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

목차

1. 국정조사 실시의 필요성	3
2. 국정조사 핵심 조사 과제	5
I.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책임 규명	5
II.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 및 대통령 격노로 인한 수사 외압	13
III.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죄 입건 및 항명죄 기소	20
IV. 해병대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및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기록 무단 회수	25
V.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34
VI. 기타	39
[참고자료1]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관련 주요 인물	43
[참고자료2]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일지와 통신기록 (2023.7.19. ~ 8.)	49
[참고자료3] 말바꾸기 및 진술 불일치 정리	69
1. 말바꾸기	69
2. 진술 불일치	71
[참고자료4]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관계자들의 법적책임에 대한 검토	72
1. 대통령 등 수사외압 관계자들의 법적책임	72
2. 주요법적 쟁점과 시사점	73

1. 국정조사 실시의 필요성

- 국제인권기준은 국가의 책임으로 생명권이 침해된 경우 해당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공평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고, 효과적이며, 신뢰가능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리고 진상규명의 대상에는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 사망사건이 발생한 당시,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적절했는지가 포함됨.
- 채 상병 사망사건은 군에 복무 중이었던 한 청년이 국가의 책임으로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사건으로 위 원칙에 따라 사망사건 당시 관계자들의 책임 뿐만 아니라 이후 이루어진 후속조치 전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부당한 개입으로 경찰과 공수처는 한정된 영역에 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사건은 대통령실, 국방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경북경찰청, 해병대 등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을 구명하기 위한 민간인의 로비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으로, 현재 고발된 사람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 검찰 및 공수처 수사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음. 나아가 대통령실 등의 개입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인 상황임. 더불어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는 채 상병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외압과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부당한 개입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 시간이 지날수록 진상을 규명하기는 어려워지고,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는 은폐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채 상병 사망사건 전반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의 추진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거부로 좌초되고 있는 상황임.
- 이상과 같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다수의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부당히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경찰과 공수처의 성역없는, 충분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증거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진상규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 등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밖에 없음. 나아가 국정조사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없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도 함.

-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가 제출되었고,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국정조사는 바로 개시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장에게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신속한 국정조사의 실시를 촉구함.

2. 국정조사 핵심 조사 과제

I.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책임 규명

1. 예천 수해 현장 해병대 1사단 투입 결정 경위

(1) 개요

- 2023년 7월 17일 예천 수해 현장에 해병대 1사단 예하 신속기동부대가 투입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초 국방부에서는 예천 수해 현장은 지역 관할 부대인 육군 2작전사령부 및 육군 50사단을 투입하고, 상황 유지를 위해 해병대 1사단 예하 신속기동부대는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하게 부대 투입을 희망하여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7월 17일 오전 긴급하게 호우피해복구작전 투입 지시가 하달되어 예하부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긴급히 예천으로 전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실제 7월 17일 오전 해병대 1사단 내에서는 마린온 헬기 추락 사건 추모 행사 지원 관계로 부대 버스가 행사 차량으로 모두 차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전 내로 출발하라는 긴급한 지시가 하달되어 실무자 간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바 있음. 또, 갑작스러운 지시에 병력을 총원하기 어려워 신속기동부대로 지정된 7여단 뿐 아니라 호우피해복구작전과 무관한 포병여단까지 대민지원에 차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도 함.
- ➔ 사단장의 공명심에 의해 무리하게 해병대 1사단이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투입되어 준비 없이 위험한 수색 작전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의혹을 규명하여 사망 사건 발생의 단초를 찾아야 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한덕수	-	국무총리	수해 현장 군 부대 투입 지시 후 최초 국방부 보고 사항	
이종섭	-	국방부장관	수해 현장 군 부대 투입 지시 후 최초 투입 부대 결정 사항 및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투입 경위	

김계환	중장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투입 경위	
임성근	소장	해병대 1사단장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투입 경위 및 투입 경과	
박상현	대령	해병대 7여단장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투입 경위 및 투입 경과	투입 부대 참모 포함
문병삼	소장	육군 50사단장	예천 지역 호우피해복구작전 투입 관련 초기 수명 사항 및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투입 경과	

2. 합참 단편명령에 따른 작전명령권 이관 및 임성근 위법한 지시 경위

(1) 개요

- 7월 17일 오전 10시 부 합참 단편명령에 따라 해병대 1사단 예하 신속기동부대(부대장 7여단장 박상현)는 호우피해복구작전에 있어 임성근이 아닌 50사단장의 지휘를 받게 되었음. 그러나 임성근은 7월 18일 오전부터 작전 현장에 등장하여 7여단장을 따라다니며 지시사항을 하달하였고, VTC(화상회의) 일일 결산회의를 주관하며 작전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와 질책,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7월 19일 사건 당일에도 채 상병 소속 부대에 대한 현장 시찰을 예정하고 있었음. 이처럼 임성근은 사실상 상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50사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로 지시를 남발하여 무리한 수중 수색을 초래하는 등 사망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였음. 임성근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불송치 면죄부를 준 경북경찰청조차 인정하고 있음.
- ➔ 이러한 위법한 지시가 적법한 지휘권을 가진 50사단, 2작전사령부 등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여 임성근의 범죄 혐의를 규명해야 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합동참모본부 담당자			단편명령 발령 경위	
신희현	대장	육군 2작전사령관	단편명령 발령 경위, 임성근 사단장 위법한 지시 행위 인지 여부	

문병삼	소장	육군 50보병사단장	단편명령 발령 경위, 임성근 사단장 현장지도 경위, 위법한 지시 행위 인지 여부	
임성근	소장	해병대 1사단장	단편명령 발령 경위, 현장지도 경위	
박상현	대령	해병대 7여단장	임성근 사단장 현장지도 경위 및 경과	

3. 임성근 현장 지휘에 따른 수색 작전 변화 과정

(1) 개요

- 7월 18일 오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예천 호우피해복구작전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지도를 실시함에 따라 도로에서 진행되는 도보수색이 둑 아래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찢어보며 실시하는 수색으로 변경되었고,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수색이 강행되는 등 인근 부대 육군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함. 도보수색은 임성근이 현장 지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7여단장 지시 하에 지형정찰을 실시한 후 결정한 수색 방법으로, 임성근은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현장 지도를 무리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현장 간부들의 진술에 따르면 임성근은 7월 18일 VTC 결산회의에서 가슴장화 착용 등을 언급하며 수중수색을 암시한 바 있고, 잦은 질책으로 현장 간부들의 부담감을 높이는 등 호우피해복구작전을 통해 실증자를 발견하기 위해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함.
- ➔ 특히 이러한 임성근의 현장 지도와 수색 작전 변화 과정은 경북경찰청 등 담당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불송치를 결정한 바, 이어지는 수사 외압, 구명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의혹 중 하나임.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임성근	소장	해병대 1사단장		
박상현	대령	해병대 7여단장	7월 18일 오전 지형정찰 지시 및 도보수색 지시 경위, 임성근 현장 지도 수행 경위 및 경과	

000	소령	해병대 7여단 작전과장	7월 18일 오전 지형정찰 실시 경과 및 도보수색 결론 도출 경위, 임성근 현장 지도에 따른 작전 변화 사항	
000	원사	해병대 7여단 주임원사	7월 18일 오전 지형정찰 실시 경과 및 도보수색 결론 도출 경위, 임성근 현장 지도에 따른 작전 변화 사항	
노재복	대령	해병대 포병여단장	7월 18일 임성근 현장 지도 중 임성근에 의한 질책 여부 및 질책 내용	
000	소령	해병대 포병여단 작전과장	임성근 현장 지도에 따른 작전 변화 사항	
000	대위	해병대 포병여단 군수과장	임성근 현장 지도에 따른 작전 변화 사항, 군화 착용 건의 묵살 경위	
최진규	중령	해병대 포병여단 포11대대장	임성근 현장 지도에 따른 작전 변화 사항, 7월 19일 수중 수색 지시 경위	
000	대위	해병대 포병여단 포11대대 본부중대장	임성근 현장 지도에 따른 작전 변화 사항	
이용민	중령	해병대 포병여단 포7대대장	임성근 현장 지도에 따른 작전 변화 사항, 7월 19일 수중 수색 지시 경위, 군화 착용 건의 묵살 경위	
000	대위	해병대 포병여단 포7대대 군수과장	임성근 현장 지도에 따른 작전 변화 사항, 군화 착용 건의 묵살 경위	
000	중위	해병대 포병여단 포7대대 본부중대장	임성근 현장 지도에 따른 작전 변화 사항, 군화 착용 건의 묵살 경위	
000	중사	해병대 포병여단 포7대대 본부중대 수색조장	임성근 현장 지도에 따른 작전 변화 사항	
000	중령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3대대장	7월 18일 임성근 포3대대 현장지도 경위, 경과 및 질책 사항, 수중 수색 경위	
000	대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3대대 9중대장	7월 18일 임성근 포3대대 현장지도 경위, 경과 및 질책 사항, 수중 수색 경위	

4. 임성근 수중 수색 사전 인지 정황

(1) 개요

- 예천 지역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신속대응부대에서는 이미 사건 발생 전날인 7월 18일부터 수중 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진은 포3대대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있음. 한편, 임성근은 포3대대에서 수중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을 7월 19일 오전에 1사단 공보정훈실장의 카카오톡 보고를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수중수색 금지 지시를 수차례 강조하였다는 임성근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정황임. 그러나 임성근은 해병대수사단의 변사사건수사 당시 초기 진술에서는 사진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사진 보고를 받은 사실이 물증으로 확인되자 ‘수중수색 금지 지시를 강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하들이 수중수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내놨음.
- 또한 임성근이 7월 19일 오전 포병대대 수색 현장 시찰에 앞서 7여단장과 포7대대장이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임성근의 시찰 장소로 ‘물 속에 장병들이 들어가 있는 곳’을 물색, 지정하고 있는데 수중수색을 금지했다는 임성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단장, 대대장이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임.
- ➔ 이미 7월 18일부터 수중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7월 19일에도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성근이 수중 수색을 모르고 있었다던가, 수중 수색을 금지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임성근	소장	해병대 1사단장	7월 19일 오전 7월 18일 자 수중 수색 사진 인지 여부, 7월 19일 포7대대 간방교 일대 시찰 시 예하부대에서 수중 수색을 보여주려 한 경위	
박상현	대령	해병대 7여단장	7월 19일 06:20 포7대대장과 임성근 시찰 부대 지정 시 “그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라고 보고받게 된 경위 및 7월 18일 포3대대 별방리 인근 입수 경위	

이용민	중령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	7월 19일 06:20 7여단장과 임성근 시찰 부대 지정 시 “그 물속에 좀 들어가는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라고 보고하게 된 경위	
000	중령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3대대장	7월 18일 별방리 인근에서 입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무릎 높이 입수를 지시, 촬영하여 공보 계통으로 보고하게 된 경위	
000	중령	해병대 1사단 공보정훈실장	7월 18일 별방리 인근 입수 사진을 포3대대장으로부터 확보하여 7월 19일 오전 임성근에게 보고한 경위	공보정훈실 실무자 포함
000	-	오마이뉴스 기자	취재 중 7월 18일 별방리 인근 장병 입수 장면을 목격한 사실	

5.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상황

(1) 개요

- 채 상병 사망 사건 전후로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와 병사들이 갖고 있던 수중 수색 전후의 상황 인식, 수중 수색 실시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여 기존 지휘관 중심의 진술 뿐 아니라 현장 지휘 간부, 피해자의 목소리로 사건을 재구성 할 필요가 있음.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이용민	중령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	사망 사건 발생 전후 현장 상황, 수중 수색 실시 경위에 대한 상황 인식	
000	중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 본부중대장	사망 사건 발생 전후 현장 상황, 수중 수색 실시 경위에 대한 상황 인식	
수중수색 및 수중수색 지원에 참여한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 장병			사망 사건 발생 전후 현장 상황, 수중 수색 실시 경위에 대한 상황 인식	000 중위 000 중위, 000 중사, 000 하사, 000 병장, 000 병장,

		000 병장, 000 상병, 000 상병, 000 상병, 000 일병, 000 일병
--	--	--

6.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생존장병 대상 후속 대처의 문제점

(1) 개요

- 사망 사건 발생 다음 날인 7월 20일 오전, 문경 STX리조트에서 체류 중이던 채 상병과 함께 수중 수색에 참여한 중대원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1사단으로 이동하여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 상병 부모님과 대면 면담을 진행함. 면담에 앞서 간부들은 장병들에게 가장 깨끗한 군복과 군화를 신고 오라고 지시한 뒤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시켰음. 사건 발생 책임자 중 하나인 대대장 등 지휘관들과, 또 다른 피해자인 생존장병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유가족과 대면시킴으로써 생존장병의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였음.
 - 뿐만 아니라 해병대 1사단은 사건 발생 이후 첫 주말(7월 22~23일) 사이 생존장병의 가족들이 부대에 요청한 면회, 출타 등의 요청을 모두 거부하고 출타 제한을 진행하였다가 논란이 일어남.(※ 기 계획 출타만 허용)
 - 이후 생존장병 트라우마 관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해병대 1사단이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여 실제 이용한 장병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 이러한 후속 대처는 생존장병들의 입을 막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부절절한 조치들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규명해야 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임성근	소장	해병대 1사단장	사건 발생 이후 후속 처리 과정 인지, 개입, 지휘 경위	
박상현	대령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사건 발생 이후 후속 처리 과정 인지, 개입, 수명, 지휘 경위	

이용민	중령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	사건 발생 이후 후속 처리 과정 인지, 개입, 수명, 지휘 경위	
000	중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 본부중대장	사건 발생 이후 후속 처리 과정 인지, 개입, 수명, 지휘 경위	
수중수색에 투입 된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 본부중대원			사건 발생 이후 후속 처리 과정의 경험과 인지한 문제점	간부, 병사

II.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 및 대통령 격노로 인한 수사 외압

7. 수사 결과 보고 및 1사단장 교체 논의 과정

(1) 개요

- 7월 28일 오전 7시 20분 경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경북 포항 소재 ‘호텔마린’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수사보고를 받은 이후, 같은 날 오전 10시 김계환 사령관이 1사단을 방문하여 임성근 사단장을 만나 입건 예정 사실을 알려주고 사의 표명을 접수한 뒤, 임성근 사단장 교체를 위한 후임 인사, 임성근 신상 변동 등에 대해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등과 차례로 토의하여 실제 분리파견 조치 등 사단장 교체 전 선행 조치 등을 수행하였음.
- 당시 군 내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임성근 책임론’에 대한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임성근 사단장 교체 등 후속 인사 조치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음을 밝혀내야 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김계환	중장	해병대사령관	7/28 수사결과 보고 이후 1사단장 신상 처리를 위해 진행한 조치 전반	
이종호	대장	해군참모총장	7/29 수사결과 보고 시 해병대사령관과 1사단장 신상 처리에 대해 토의한 사실 및 이후 참모 등과 이에 대해 토의한 사실	
이종섭	-	국방부장관	7/30 수사결과 보고 시 해병대사령관과 1사단장 신상 처리에 대해 토의한 사실 및 이후 참모 등과 이에 대해 토의한 사실	
주일석	소장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1사단장이 교체되어 후임자로 내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거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김승겸	대장	합동참모의장	휘하 주일석을 1사단장 후임자로 정해도 되는지 김계환 등과 협의한 사실	

정종범	소장	해병대부사령관	1사단장 후임자로 내정된 사실을 인지한 사실과 인지 경로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수사결과 장관 보고 배석 후 장관-해병대사령관 간 1사단장 신상 처리에 대해 장관에게 들은 내용	
허태근	-	국방부 정책실장	수사결과 장관 보고 배석 후 장관-해병대사령관 간 1사단장 신상 처리에 대해 장관에게 들은 내용	
이윤세	대령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수사결과 장관 보고 배석 전후 1사단장 신상 처리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내용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결과 장관 보고 배석 전후 1사단장 신상 처리에 대해 해병대사령관과 토의한 사실	
임성근	소장	해병대 1사단장	7/28 해병대사령관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전후 사정 및 포항-화성으로의 이사 준비 과정에서의 비용 지출 정황	
문연철	대령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수사결과 및 1사단장 교체 논의에 대한 첩보 인지 및 정보 보고 상황	

8. 7/31 브리핑 중단, 이첩 보류 지시 등 외압 발생 과정

(1) 개요

- 7월 21일부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형래 행정관(해병대 파견) 등이 해병대수사단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7월 30일에 이르러 수사 브리핑 자료를 확보한 정황에 이어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보좌관 회의가 진행된 뒤로 소위 ‘VIP 격노’가 발생하고 예정되어 있던 수사결과 언론 브리핑과 국회 대면 보고가 중단된 경위를 확인해야 함. 아울러 격노 전후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 간 오간 모든 통화 내역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윤석열	-	대통령	수사결과를 청취한 후 격노에 이르게 된 경위	
조태용	-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격노 전 수사결과 인지 경위 및 후속 조치, 각 통화 내용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임종득	-	국가안보실 2차장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임기훈	소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김형래	대령	국가안보실 행정관 (해병대 파견)	수사 진행 상황 확인을 지시 받은 경위와 확인 사실 보고 루트	
2023.7.31. 대통령실 외교안보분야 수석비서관 회의 배석자 전원			회의 중 수사결과 보고 여부 및 대통령 격노 경위	
김용현	-	대통령 경호처장	대통령 격노 시점 02-800-7070 전화 사용 경위 및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강의구	-	대통령실 부속실장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주진우	-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이시원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이종섭	-	국방부장관	대통령실 명의 전화(02-800-7070) 수신 이후 브리핑 중단 등을 지시하게 된 경위와 이후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신범철	-	국방부차관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박진희	소장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언론브리핑 중단 경위 및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

			대책회의(13:30) 배석 상황	포함
허태근	-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 대책회의(13:30) 배석 상황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수사결과 및 언론브리핑 중단 상황 등 인지 경위 및 국방부 대책회의(13:30) 배석 상황,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법무관리관실 관계자 포함
김계환	중장	해병대사령관	VIP 격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격노 이후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들과 나눈 통화 내용	
정종범	소장	해병대부사령관	국회브리핑 중단 경위 및 국방부 대책회의(13:30) 배석, '정종범 메모' 내용,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김화동	대령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이윤세	대령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언론브리핑 중단 경위 및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언론브리핑 동행 해병대수사단 관계자 포함
문연철	대령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언론브리핑 중단 경위 첩보 파악 및 정보 보고 상황	
해병대사령부 참모 보직자 전원			언론브리핑 중단 이후 해병대 내 대책 회의 상황 및 관련자 각 통화 및 조치 내용	

9. 임성근 파견 취소, 휴가 처리 등 신변 정리 과정

(1) 개요

- 7/31 오전 11시 17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임성근 1사단장을 해병대사령부로 분리파견 한다는 명령을 발령하기 전후로 정종범 부사령관이 후임자로 내정되었으며, 임성근 사단장이 집무실 이전 준비를 완료하고 공관 이사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김계환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장, 여야 간사 및 해병대전우회 총재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등과 이러한 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를 나누었음. 그런데 11시 59분 경 이종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1사단장 복귀 명령을 수명한 후 급히 분리파견을 취소하였으며, 임성근 사단장은 파견명령으로 인한 당일 미출근 상태를 소급 휴가 상신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정 처리가 이어졌음. 이러한 가운데 이종섭 장관은 13시 30분에 열린 국방부 대책회의에서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에게 임성근 휴가 처리와 관련한 지시를 하달하고(정종범 메모), 이후 사령부로 복귀 중인 정종범에게 다시 전화하여 관련 사항을 강조하기도 하였음.

➔ 파견명령-파견취소-소급휴가-휴가처리강조-휴가결재 등 임성근 사단장 신상 처리를 위해 급박하고 비정상적인 행정처리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임성근 구명로비’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 사항임.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김계환	중장	해병대사령관	1사단장 분리파견 명령 발령, 결재, 취소 경위, 1사단장 소급 휴가 결재 경위	
정종범	소장	해병대부사령관	1사단장 분리파견 명령 발령, 결재, 취소 경위 및 신임 1사단장 취임을 위한 집무실, 공관 이전 준비 여부, 7/31 13:30 국방부 대책회의 시 임성근 휴가 처리 관련 지시 수명 상황 및 해병대사령부 귀환 중 이종섭/박진희와의 관련 통화 내용	
이호종	준장	해병대사령부 참모장	1사단장 분리파견 명령 발령, 결재, 취소 경위	
김태원	대령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1사단장 분리파견 명령 발령, 결재, 취소 경위	
김화동	대령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1사단장 분리파견 명령 발령, 결재, 취소 경위	
이운세	대령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	1사단장 분리파견 명령 발령, 결재, 취소 경위	

문연철	대령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1사단장 인사조치 필요 정보 보고 경위, 1사단장 분리파견 명령 발령, 결재, 취소 과정에서의 정보 보고 내용	
임성근	소장	해병대 1사단장	분리파견 명령 후 집무실 이전 및 공관 이사 준비 및 분리파견 취소 후 원상복구 상황, 7/31자 당일 소급 휴가 신청 경위, 관련자 각 통화 내용	
최윤영	대령	해병대 1사단 행정부사단장	1사단장 분리파견에 따른 직무대리 보임 경위 및 7/31자 당일 소급 휴가 경위, 1사단장 파견 취소 이후 해병대사령관, 1사단장과의 통화 내용	
000	중령	해병대 1사단 인사참모	1사단장 7/31자 당일 소급 휴가 신청 경위	
000	대위	1사단장 부관	7/31 1사단장 집무실 이전 준비 및 공관 이사 준비와 파견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등 상황, 1사단장 7/31자 당일 소급 휴가 신청 경위	
000		해병대1사단 소속 부사관	1사단장 7/31자 당일 소급 휴가 신청 실무 진행 경위	
한기호	-	국회 국방위원장	1사단장 인사 조치 관련 해병대사령관과의 통화 내용	
신원식	-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1사단장 인사 조치 관련 해병대사령관과의 통화 내용	
김병주	-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	1사단장 인사 조치 관련 해병대사령관과의 통화 내용	
이상훈	-	해병대전우회 총재	1사단장 인사 조치 관련 해병대사령관과의 통화 내용	
이종호	대장	해군참모총장	1사단장 인사 조치 관련 해병대사령관과의 통화 내용	
이종섭	-	국방부장관	1사단장 파견 명령 등 인사조치 관련 해병대사령부 보고 여부,	박진희 군사보좌관 포함

			13:30 국방부 대책회의 시 정종범에게 임성근 휴가 처리 관련 지시 경위 및 우즈베키스탄 출국 이동 중 임성근 휴가 관련 강조 지시 경위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언론브리핑 예정 내용 1사단장 인사조치 포함 여부	
박정훈	대령	해병대수사단장	언론브리핑 예정 내용 1사단장 인사조치 포함 여부	
조태용	-	국가안보실장	7/31 오전 해병대 수사결과 인지 시 1사단장 인사조치 관련 내용 포함 여부	
임기훈	소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7/31 오전 해병대 수사결과 인지 및 대통령 보고 시 1사단장 인사조치 관련 내용 포함 여부	
김형래	대령	국가안보실 행정관 (해병대 파견)	해병대수사결과 관련 정보 수집 시 1사단장 인사조치 관련 내용 포함 지득 여부	

III.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죄 입건 및 항명죄 기소

10.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과정

(1) 개요

-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등 8명을 혐의자로 명시하여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후 박정훈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을 해임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다가, 재차 보직해임하는 과정을 규명하여 수사단장 보직 해임 관련 인사 훈선이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직권남용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규명해야 함. 특히 보직해임 결정이 반복되는 과정에 대통령이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주지해야 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단장 보직해임 경위	
김계환	중장	해병대사령관	수사단장 보직해임 경위	
정종범	소장	해병대부사령관	수사단장 보직해임 경위	
이호종	준장	해방대사령부 참모장	수사단장 보직해임 경위	
김태원	대령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수사단장 보직해임 경위 및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상정 '장교 보직해임 심의 안건' 작성 시 이첩 지시 주체를 '장관'에서 '사령관'으로 삭선 수정한 경위	인사참모부 실무자 포함
기타 해병대사령부 참모			수사단장 보직해임 당시 상황 및 지휘 조언 내용	
해병대사령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수사단장 보직해임 심의 당시 상황 및 외압 여부 및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상정 '장교 보직해임 심의 안건' 작성 시 이첩 지시 주체를 '장관'에서 '사령관'으로 삭선 수정한 경위	
윤석열	-	대통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개입 여부	

대통령실 관계자			보직해임 시점 대통령-장관 통화 이후 각 관련 통화 내용	
이종섭	-	국방부장관	대통령 통화 내용 및 수사단장 보직해임 개입 여부	
신범철	-	국방부차관	국방부장관 부재에 따른 수사단장 보직해임 개입 여부	

11. 박정훈 대령 등 집단항명수괴죄 입건 및 적용죄목 변경 과정

(1) 개요

-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생소하고 생뚱맞은 법리 적용과, 박정훈의 공범으로 지목된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의 초기 입건 혐의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등으로 황당하게 짜맞추어졌다가 곧 피의자 신분을 벗게 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방부검찰단이 사건 초기 수사에 혼선을 빚은 까닭이 ‘박정훈 수사’에 뒷선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음.
- ➔ 소위 항명죄 수사가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해병대사령부 전체를 겨냥하고 이루어졌으나 해병대사령관 등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박정훈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박정훈 대령 수사 주체인 국방부검찰단이 사건 초기 수사의 대상이 되는 항명의 주체를 ‘집단’으로 보았다가 ‘개인’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 보직해임 과정에서 확인되는 항명의 대상을 ‘국방부장관’에서 ‘해병대사령관’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 등이 확인되어야 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김동혁	준장	국방부검찰단장	수사 계획 상부 보고 과정, 수사 개시 결정 과정, 집단항명수괴죄 의율 및 의율 변경 과정, 수사 초기 상황	수사 담당자
김민정	중령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	수사 계획 수립 과정, 수사 개시 결정 과정, 집단항명수괴죄 의율 및 의율 변경 과정, 수사 초기 상황	수사 담당자

염보현	대위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수사 계획 수립 과정, 수사 개시 결정 과정, 집단항명수괴죄 의율 및 의율 변경 과정, 수사 초기 상황	수사 담당자
조태수	원사	국방부검찰단 군검찰수사관	수사 계획 수립 과정, 수사 개시 결정 과정, 집단항명수괴죄 의율 및 의율 변경 과정, 수사 초기 상황	수사 담당자
이종섭	-	국방부장관	집단항명수괴죄 등 수사 개시 관련 대통령 통화 내용, 신범철, 유재은, 김동혁 등과의 소통 여부 및 소통 내용	
신범철	-	국방부차관	8/2 13:30 신범철-김동혁-유재은 회의 내용, 집단항명수괴죄 등 수사 개시 관련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과의 소통 내용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8/2 13:30 신범철-김동혁-유재은 회의 내용	
김계환	중장	해병대사령관	집단항명 관련 수사 참고인 수사 과정	
해병대사령부 참모단			집단항명 관련 수사 참고인 수사 과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 관련 수사 피의자 수사 과정	
해병대수사단 관계자			집단항명 관련 수사 피의자, 참고인 수사 과정	
윤석열	-	대통령	집단항명수괴죄 등 수사 개시 개입	
대통령실 관계자			수사 개시 시점 대통령-장관 통화 이후 각 관련 통화 내용	

12. 국방부검찰단의 해병대 지휘부 수사 압박 의혹

(1) 개요

- 8월 2일 국방부검찰단이 해병대사령부에 들이닥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사령부 장군 참모를 차례로 조사하며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압박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함.
- 특히 김계환 사령관의 경우 1차 조사 진술과 이후 2, 3, 4차 조사 진술 내용 상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군 조직 특성 상 하급자인 국방부검찰단장이 혐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급자인 해병대사령관에게 사전 통보나 소환 절차 없이 갑자기 부대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전례없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함. 이 역시 국방부검찰단의 항명죄 수사가 위선의 지시에 따른 기획 수사라는 정황과 연결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김동혁	준장	국방부검찰단장	수사 당시 정황	수사 담당자
김민정	중령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	수사 당시 정황	수사 담당자
염보현	대위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수사 당시 정황	수사 담당자
조태수	원사	국방부검찰단 군검찰수사관	수사 당시 정황	수사 담당자
김계환	중장	해병대사령관	집단항명 관련 수사 참고인 수사 과정, 진술 변경 경위	
해병대사령부 참모단			집단항명 관련 수사 참고인 수사 과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 관련 수사 피의자 수사 과정	
해병대수사단 관계자			집단항명 관련 수사 피의자, 참고인 수사 과정	

13. 국방부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과정

(1) 개요

- 국방부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제기한 대통령 격노 사실에 대해 ‘망상’이라는 모욕적 언사를 적시한 구속영장청구서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시하였으나 9월 1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 당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허위사실 및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내용 등이 다수 적시되었는데 이러한 무리한 구속 시도에 윗선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존재함.
 - 아울러 국방부 정책실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석 연휴 전후로 예비역 군인 및 국방부 내 각종 자문위원 등에게 소위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괴문서를 살포하여 박정훈 대령에 대한 모함을 그치지 않았으나 문서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음.
-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방부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기소하게 된 바, 구속영장 청구에서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 수사 과정에도 외압에 행사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김동혁	준장	국방부검찰단장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당시 상황, 괴문서 작성 관여 여부	수사 담당자
김민정	중령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당시 상황, 괴문서 작성 관여 여부	수사 담당자
염보현	대위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당시 상황, 괴문서 작성 관여 여부	수사 담당자
조태수	원사	국방부검찰단 군검찰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당시 상황, 괴문서 작성 관여 여부	수사 담당자
이종섭	-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괴문서 작성 관여 여부(이종섭은 상관모욕죄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이종섭 및 참모집단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임)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괴문서 작성 관여 여부	
이창민	중령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총괄장교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괴문서 작성 관여 여부	
허태근	-	국방부 정책실장	괴문서 배포 경위	정책실 실무자 포함
국방부 각 자문위원			괴문서 수령 경위	

IV. 해병대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및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기록 무단 회수

14. 이첩 전후 주요 관계 수사기관(군검경 및 검경) 실무자 토의 과정

(1) 개요

-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기록 이첩을 전후하여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관계되어 있는 해병대수사단과 경상북도경찰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해군 검찰단의 각 실무자 간에 이첩 일정, 이첩 내용 등과 관련한 소통이 이루어진 바 있음.
 - 경북경찰청은 이첩 전 사건 진행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첩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첩 후 수사기록 회수 시점에는 해병대수사단 실무자와 통화하며 경북경찰청 실무자가 흐느끼는 등 외압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함.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해병대수사단의 해병대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 수사결과보고에 즈음하여 해군검찰단 소속 군검사 등에 수사 중 사건의 사건기록 열람을 요구한 바 있으며, 해군 검찰단 소속 군검사 2명의 경우 채 상병 검시에 참여한 이후 변사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담당 군검사로서 의견서를 제시하려다 상관에 의해 무마되었으나 이후 해병대수사단에 사단장 등 지휘책임과 관련한 조언,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였고, 이첩 후 수사기록 회수 시점에는 ‘무서운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수사기록 사본을 잘 보존해둘 것을 조언하는 등 외압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함.
- ➔ 이에 관련 수사기관 실무자들을 조사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실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000	대위	해군검찰단 2보통검찰부 검찰3과 군검사	검시 후 의견서 작성 건의 경위, 변사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소회, 해병대수사단 법리조언 및 관련 자료 제공 경위, 검찰 측으로부터 사건기록 열람 요구를 받은 경위	
000	대위	해군검찰단 2보통검찰부 검찰3과 군검사	검시 후 의견서 작성 건의 경위, 변사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소회, 해병대수사단 법리조언 및 관련	

			자료 제공 경위, 검찰 측으로부터 사건기록 열람 요구를 받은 경위	
고민숙	대령	해군 검찰단장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해군 군검사들에 대한 입단속을 요구받은 사실 여부	
이성은	중령	해군검찰단 2보통검찰부장	김동은, 허호재에게 검시 후 의견서 작성을 하지 못하게 한 경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채 상병 사망 사건 담당 검사(2명) 및 검찰수사관			해군검찰단 담당 군검사에게 사건기록 열람을 요구한 경위	
이진식	경정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해병대수사단에 사건 기록 이첩을 서둘러줄 것을 요구한 경위	
000	경감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본부팀장	해병대수사단에 사건 기록 이첩을 서둘러줄 것을 요구한 경위, 이첩 이후 박영길과 통화하며 흐느낀 경위	
000	경감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조사팀장	해병대수사단에 사건 기록 이첩을 서둘러줄 것을 요구한 경위	
000	중령	해병대수사단 1광역수사대장	해군군검사에게 법리 조언, 자료를 제공 받게 된 경위, 경북경찰청과 사건 기록 이첩에 대해 사전 협의한 경위	
000	상사	해병대수사단 1광역수사대 수사관	해군군검사에게 법리 조언 자료를 제공 받게 된 경위, 경북경찰청과 사건 기록 이첩에 대해 사전 협의한 경위, 이창희와 통화한 경위	

15. 국방부검찰단 수사기록 무단 회수 결정 및 기관 간 조율 과정

(1) 개요

- 8월 2일 오전 7시 56분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가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경북경찰청에 사건이첩공문을 발송하고, 10시 30분 경 제1광역수사대장이 직접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내방하여 사건인계서, 사건기록목록, 변사사건기록 사본(총 947쪽), 증거물(CD 2장) 등 관계서류를 인계하고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이진식 등 3명에게 11시 57분까지 사건 내용을 설명하였음. 통상적으로 수사기록이 송부되면 경찰 사건담당자가 사건내용을 분석한 후 사건 개요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여야 함.
- 그러나 그에 앞서 오후 12시 20분 경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경찰이 국가수사본부 과장과 통화하였고, 해당 과장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통화하였으며,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시도하였고,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차관, 법무관리관, 국방부검찰단장이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어서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통화하는 등 사건 이첩과 관련한 모종의 모의가 진행 된 뒤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과의 협의, 조율을 거쳐 수사관을 파견,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기에 이룸.
- ➔ 이에 국방부검찰단은 권한 없는 기관으로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을 정상적 압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기관 협조’라는 명목 하에 무단으로 회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이 과정에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등이 광범위하게 개입되어있는 바 이를 지시한 사람을 규명하여야 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이종섭	-	국방부장관	해외출장 중 기록 무단회수 인지 및 승인 여부	
신범철	-	국방부차관	해외출장 장관 직무대행 시 기록 무단회수 관련 회의, 승인, 지시 사항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기록 무단회수 관련 회의, 조언, 협조 사항	
김동혁	준장	국방부검찰단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회의, 수명,	

			지시 사항	
김민정	중령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회의, 수명, 지시 사항	
조태수	원사	국방부검찰단 군검찰수사관	기록 무단회수 관련 회의, 수명 사항	
이찬묵	상사	국방부검찰단 군검찰수사관	기록 무단회수 관련 회의, 수명 사항 및 기록 무단회수 집행 경위	기록 무단회수 실무자
윤희근	치안총감	경찰청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보고 존재 여부, 대통령실 지시 수명, 기관 협조, 경찰 내부 회의 및 지시 사항	
우종수	치안정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보고 존재 여부, 대통령실 지시 수명, 기관 협조, 경찰 내부 회의 및 지시 사항	
이정철	총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대통령실 협조 요청 여부,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연락 사항, 기관 협조, 경찰 내부 회의 및 지시 사항	
최주원	치안감	경북경찰청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대통령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소통 사항, 상급자 지시 수명, 내부 회의 및 지시사항	
노규호	경무관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대통령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소통 사항, 상급자 지시 수명, 내부 회의 및 지시사항	
이진식	경정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대통령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소통 사항, 상급자 지시 수명, 내부 회의 및 지시사항, 회수 협조 사항	
000	경감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기록 무단회수 관련 대통령실,	

		본부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소통 사항, 상급자 지시 수명, 내부 회의 사항, 회수 협조 사항	
000	경감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조사팀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대통령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소통 사항, 상급자 지시 수명, 내부 회의 사항, 회수 협조 사항	
윤석열	-	대통령	기록 무단회수 개입 여부	
이시원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기록 무단회수 관련 국방부, 경찰청 소통 사항, 대통령실 상급자 지시 수명, 내부 회의 및 지시사항	
박종현	경정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찰 파견)	기록 무단회수 관련 국방부, 경찰청 소통 사항, 대통령실 상급자 지시 수명, 내부 회의 및 지시사항	
박현수	경무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경찰 파견)	기록 무단회수 관련 국방부, 경찰청 소통 사항, 대통령실 상급자 지시 수명, 내부 회의 및 지시사항	
임종득	-	국가안보실 2차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국방부, 경찰청 소통 사항, 대통령실 상급자 지시 수명, 내부 회의 및 지시사항	
임기훈	소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기록 무단회수 관련 국방부, 경찰청 소통 사항, 대통령실 상급자 지시 수명, 내부 회의 및 지시사항	
000	중령	해병대수사단 1광역수사대장	기록 이첩 상황	
000	상사	해병대수사단 1광역수사대 수사관	기록 이첩 상황 및 이첩 후 경북경찰청 수사관 통화 경위	

16. 수사기록 무단 회수 협조를 위한 경찰 내부 논의, 결정 과정

(1) 개요

- 수사기록 무단 회수 이후 해병대수사단 담당 수사관은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담당 수사관과 8월 2일 및 8월 3일 2회에 걸쳐 통화를 함. 해당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관이 기록 회수에 대해 항의하자 경북청 수사관은 “저희들도 내부에서 지금 검토 중”,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라 언급한 바 있음.
- ➔ 수사기록 무단 회수는 전례없는 위법행위로 이러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에서 누가 어떤 압력에 의해 무슨 내용의 내부 논의를 거쳐 ‘기관 간 협조’라는 명목으로 기록 회수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어냈는지 밝혀내야 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윤희근	치안총감	경찰청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보고, 경찰 내부 회의 및 지시 사항	
우종수	치안정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보고, 경찰 내부 회의 및 지시 사항	
이정철	총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보고, 경찰 내부 회의 및 지시 사항	
최주원	치안감	경북경찰청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보고, 경찰 내부 회의 및 지시 사항	
노규호	경무관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보고, 경찰 내부 회의 및 지시 사항	
이진식	경정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보고, 경찰 내부 회의 및 지시, 집행 사항	
000	경감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본부팀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보고, 경찰 내부 회의 및 지시, 집행 사항	
000	경감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조사팀장	기록 무단회수 관련 보고, 경찰 내부 회의 및 지시, 집행 사항	

17.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및 혐의자 축소 재이첩 결정 과정

(1) 개요

- 수사기록 무단 회수 이후 국방부장관은 8월 7일 채 상병 변사 사건 수사 관할을 해병대수사단에서 국방부조사본부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은 사건 기록 원본 일체를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첩하였음.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 재검토에 돌입한 국방부조사본부는 8월 14일 국방부검찰단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에 국방부조사본부의 중간 재검토결과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구하였는데, 이 때의 재검토결과는 임성근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초기 수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음.
- 그러나 8월 14일 국방부검찰단과 법무관리관실에서는 조사본부와는 다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국방부장관 주재 하 국방부검찰단, 법무관리관실, 국방부조사본부가 연석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8월 24일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재이첩할 때에는 대대장 2명만을 혐의자로 적시하여 이첩한 축소된 결과에 이르게 되었음.
- ➔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또 다시 외압이 발생하여 이첩 대상자를 축소시키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시사점, 결과적으로 혐의자로 대대장 2명을 적시함으로써 당초 혐의자를 적시하지 말고 이첩해야 한다는 장관의 지시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시사점을 낳는 대목으로 외압 유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 아울러 국방부조사본부는 재이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수사단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온나라로 발송한 이첩공문(경북경찰청이 접수처리 하지 않음)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때에 국방부조사본부와 모의하여 해병대수사단으로 반송하였다가, 해병대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인계한 까닭을 문의하며 재반송하자 답변을 거부하고 재반송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역시 조사를 통하여 그 경위를 따진다면 수사기록 무단 회수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관련자

관련자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이종섭	-	국방부장관	국방부-조사본부-검찰단 연석회의 경위 및 내용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조사본부-검찰단	

			연석회의 경위 및 내용, 조사본부 검토 요청에 따른 혐의자 축소 의견 회신 경위	
000	중령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	국방부-조사본부-검찰단 연석회의 경위 및 내용, 조사본부 검토 요청에 따른 혐의자 축소 의견 회신 경위	
이창민	중령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총괄장교	국방부-조사본부-검찰단 연석회의 경위 및 내용, 조사본부 검토 요청에 따른 혐의자 축소 의견 회신 경위	
김동혁	준장	국방부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검찰단 연석회의 경위 및 내용, 조사본부 검토 요청에 따른 혐의자 축소 의견 회신 경위	
김민정	중령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국방부-조사본부-검찰단 연석회의 경위 및 내용, 조사본부 검토 요청에 따른 혐의자 축소 의견 회신 경위	
염보현	대위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국방부-조사본부-검찰단 연석회의 경위 및 내용, 조사본부 검토 요청에 따른 혐의자 축소 의견 회신 경위	
조태수	원사	국방부검찰단 군검찰수사관	국방부-조사본부-검찰단 연석회의 경위 및 내용, 조사본부 검토 요청에 따른 혐의자 축소 의견 회신 경위	
박경훈	대령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국방부-조사본부-검찰단 연석회의 경위 및 내용, 조사본부 검토 결과 수정 후 재이첩 경위,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판단, 해병대수사단 온나라 공문 반송 처리 경위	
김진락	대령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	국방부-조사본부-검찰단 연석회의 경위 및 내용, 조사본부 검토 결과 수정 후 재이첩 경위,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판단, 해병대수사단 온나라 공문 반송 처리 경위	
000	중령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지도과장	국방부-조사본부-검찰단 연석회의 경위 및 내용, 조사본부 검토 결과 수정 후 재이첩 경위,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판단, 해병대수사단 온나라 공문 반송 처리 경위	
000	-	국방부조사본부 수사군무사무관	국방부-조사본부-검찰단 연석회의 경위 및 내용, 조사본부 검토 결과 수정 후 재이첩 경위,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판단, 해병대수사단 온나라 공문 반송 처리 경위	
최주원	치안감	경북경찰청장	해병대수사단 온나라 공문 반송 처리 경위, 관련 내부 회의 및 지시 사항	
노규호	경무관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해병대수사단 온나라 공문 반송 처리 경위, 관련 내부 회의 및 지시 사항	
이진식	경정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해병대수사단 온나라 공문 반송 처리 경위, 관련 내부 회의 및 지시 사항	
000	경감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본부팀장	해병대수사단 온나라 공문 반송 처리 경위, 관련 내부 회의 및 집행 사항	
000	경감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조사팀장	해병대수사단 온나라 공문 반송 처리 경위, 관련 내부 회의 및 집행 사항	
000	중령	해병대수사단 1광역수사대장	해병대수사단 온나라 공문 반송 처리 경위	

V.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1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연루 의혹

(1) 개요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김건희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만든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들이 임성근 구명 로비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멤버 중 한 사람인 김규현 변호사의 녹취파일 등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진 바 있음. 이를 통해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였다는 의혹, 구명 과정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개입되어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이며 서로를 알거나, 알지 못한다는 관련자들의 반복적 거짓 진술도 포착되고 있음.
- ➔ 수사 외압 규명을 위해서는 외압의 원인이 되는 구명 로비의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임성근	소장	해병대 1사단장	멋쟁해병 단톡방 구성원과의 관계, 구명로비 경위	
이종호	-	멋쟁해병 단톡방 구성원,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임성근 사단장과의 관계,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단톡방 구성원들과의 관계, 구명로비 경위	
송호종	-	멋쟁해병 단톡방 구성원,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부장	김용현 경호처장 개입설의 실체, 단톡방 구성원들과의 관계, 구명로비 경위	
최택용	-	멋쟁해병 단톡방 구성원, 사업가	단톡방 구성원들과의 관계, 구명로비 경위	
최 모	-	멋쟁해병 단톡방 구성원, 경찰	단톡방 구성원들과의 관계, 구명로비 경위	
김규현	-	멋쟁해병 단톡방 구성원, 변호사	단톡방 구성원들과의 관계, 구명로비 경위	
김용현	-	대통령 경호처장	김용현 경호처장 개입설의 실체	

김건희	-	대통령 영부인	이종호-김건희 로비설의 실체	
-----	---	---------	-----------------	--

19. 임성근 사촌동생 검사 박철완 관련 의혹

(1) 개요

- 2024년 7월 19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주다 적발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박철완은 임성근 사단장의 외사촌동생임. 적발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 검사가 그 동안 임 사단장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해왔음은 물론,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 명의의 다음 카페(cafe.daum.net/marinecorpstruth, 2024. 7. 19.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 직후’ 비공개 카페로 전환됨)의 운영진,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근무시간을 포함한 시간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옹호하기 위한 다수의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음. 해당 카페는 단순한 임성근 지지 모임을 넘어서 임성근의 법적 책임에 대한 변호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적 구명활동을 펼쳐온 사람들의 집합체였음. 이처럼 국회 청문회에서의 선서거부, 증언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 법률 조언을 하고, 임성근에 대한 적극적 구명활동을 현직 검사로서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바 임성근 사단장의 실질적 법률대리인으로서 역할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박 검사는 임성근 구명 로비에 연루되어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직 검사와 검찰 조직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 활동에 왜, 얼마나 개입되어있는지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함. 덧붙여 임성근 구명 카페의 운영진 구성 등을 파악하여 임성근 구명 세력의 실체를 밝혀야 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임성근	소장	해병대 전 1사단장	박철완 검사와의 소통 내용, 임성근 구명 카페 관여 여부	
박철완	-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임성근 구명 카페 운영 및 참여 경위, 임성근 구명 카페 운영진 구성, 임성근에 대한 실질적 변호인 역할 의혹 규명	

20. 황제연수 발령 및 명예전역 신청 배경

(1) 개요

- 임성근 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의 임기를 마치고 2023년 11월 정기 장성 인사에서 육군사관학교로 정책연수 발령을 받고 10개월 째 연수 중임. 해병대 장성이 통상 보직 없이 10개월 째 정책연수를 명 받은 상황은 전례가 없고, 재경 지역 육군사관학교로 정책연수를 발령 받은 것도 이례적인 상황임. 특히 임성근 사단장은 스스로 언론에 본인 구명 논리 개발과 관련한 ‘지휘권의 범위’를 연수기간 연구 주제로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당연히 국비로 진행되는 연구 주제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해군사관학교가 아닌 육군사관학교에서 연수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도 없어 수사, 재판을 앞둔 임 사단장이 서울에서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어왔음.
- 뿐만 아니라 임 사단장은 연수지인 육군사관학교가 ‘멀어서 출근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재경지역 해군 관사에 집을 얻고 인근의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명백한 특혜임. 해병대 장성 인사는 해병대사령관 건의, 국방부장관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인데 임 사단장은 당초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하마평에 오르다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스스로 고사’하여 정책연수를 발령받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음.
- ➔ 이에 따라 대통령 이하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등 인사 결정 계통과 임 사단장이 어떠한 경과를 거쳐 정책연수가 발령된 것인지 조사하여 밝힐 필요가 있음.
- ➔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비록 반려되기는 하였으나 임성근 사단장이 2024년 7월 23일 법령규정이 정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규정이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한 시점에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수리하고, 이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특별히 소집한 이유와 경과에 대해 밝혀 특혜 의혹을 규명해야 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임성근	소장	해병대 1사단장	2023. 11. 장군 인사 시 인사권자 의사 고사(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 경위, 정책연수 발령 경위, 정책연수 경과 및 성과, 명예전역 신청	

			경위	
윤석열	-	대통령	2023. 11. 장군 인사 시 임성근 사단장 관련 인사 제청안 수리 경위	
이종섭	-	국방부장관	2023. 11. 장군 인사 시 임성근 사단장 관련 인사 제청 경위, 정책연수 발령 경위	
김계환	중장	해병대사령관	2023. 11. 장군 인사 시 임성근 사단장 관련 인사 건의 경위, 정책연수 발령 경위, 임성근 명예전역 신청 수리 경위	
권영환	중장	육군사관학교장	임성근 육군사관학교 정책연수 실시 경위 및 경과, 육군사관학교 연수 기간 중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출근 경위	
000	중령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장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내 임성근 정책연수 장소 제공 경위	
양용모	대장	해군참모총장	임성근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 회부 경위	

21.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불송치 결정 과정

(1) 개요

- 경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년 7월 8일 임성근 사단장 등 채 상병 사망 사건 사망원인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 수색조장 등 실종자 수색 지휘계선 전원과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송치하였으나 유독 임성근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하였음(2024년 7월 23일 채 상병 유가족은 수사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함.). 경북경찰청은 매우 상세한 임성근 불송치 사유를 작성하여 언론에 브리핑하였으나, 정작 송치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사심의위원회에는 한 페이지짜리 부실한 서면만을 제출하였다고 함. 이에 따라 임성근 봐주기 수사였다는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경찰청이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이 각각 진행 중이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2023년 11월 16일부로 수사외압 관련 기관인 경북경찰청에 전담시키는 수사관할 조정을 하면서부터 예정된 결과였음.

➔ 경북경찰청이 사건 수사를 맡 임성근 불송치를 결정하게 된 시점부터 불송치를 결정하기에 이르기까지 경찰 내에서 어떠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규명해야 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윤희근	치안총감	경찰청장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할 경북경찰청 일원화 결정 경위	
우종수	치안정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할 경북경찰청 일원화 결정 경위	
최주원	치안감	(전) 경북경찰청장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진행 경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할 경북경찰청 일원화 결정 경위	
김철문	치안감	(현) 경북경찰청장	임성근 불송치 수사 결과 도출 경위, 수사심의위원회 진행 경과, 수사브리핑 준비 경과	
최문태	경정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	임성근 불송치 수사 결과 도출 경위, 수사심의위원회 진행 경과, 수사브리핑 준비 경과	
김규은	경정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	임성근 불송치 수사 결과 도출 경위, 수사심의위원회 진행 경과, 수사브리핑 준비 경과	
김수영	치안감	(전) 대구경찰청장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할 경북경찰청 일원화 결정 경위	
임상규	-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진행 경과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진행 경과	

VI. 기타

22.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의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 무마 의혹

(1) 개요

-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장례식장을 찾아 해병대수사단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본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의 부당성을 피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2023년 8월 14일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나눈 뒤로 태도가 돌변하여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사건을 기각시키기 위해 상식 밖의 회의 불참 행태 등을 보이고, 본안 진정사건 역시 담당 조사관의 인용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의결 절차를 벗어나 기각 결정을 강행하고, 법규에도 없는 ‘수사인권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혼선을 초래하였음.
 -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통화 내역 제출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등 의혹을 계속 키워왔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위가 진정한 군인권센터에게 정보공개한 조사결과보고서 공개가 위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음. 일련의 결과로 만들어 진 박정훈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인권위 기각 결정은 윤석열 정권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부인하는 주요한 논거로 쓰이고 있음.
 - 한편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군인권보호관과 8월 14일 통화 시 대화한 내용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에 따르면 이 장관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초급간부 2명을 제외한 6명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8월 14일 국방부조사본부의 초기 재검토 결과와 일치하여(이후 대대장 2명 이첩으로 변경), 이종섭-김용원 통화는 수사외압 사건 규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증거 정황임.
- ➔ 이에 이종섭-김용원 간 통화의 실체와 인권위에 대한 외압 유무도 주요하게 조사하여 규명해야 할 사안임.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이종섭	-	국방부장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군인권보호관과의 통화 횟수,	

			통화내용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담당자			이종섭-김용원 전화 연결을 위한 실무 진행 경과	
김용원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소통 내역, 내용 및 긴급구제, 진정사건 기각 결정 경과	
000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국 군인권총괄과장	이종섭-김용원 전화 연결을 위한 실무 진행 경과	
000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채 상병 사망 사건 긴급구제, 진정사건 조사 경과 및 기각 결정 경과	
000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비서	이종섭-김용원 전화 연결을 위한 실무 진행 경과, 김용원 발 개인 보도자료 배포 경위	
원민경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	채 상병 사망 사건 긴급구제, 진정사건 기각 결정 경과	
한석훈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	채 상병 사망 사건 긴급구제, 진정사건 기각 결정 경과	

23.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회피 성 주호주한국대사 임명 의혹

(1) 개요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주요 피의자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 된 상태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되고 주호주한국대사로 임명되어 출국을 강행하였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로 인해 곧 귀국하여 호주대사직을 사임하였음.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려 공수처의 수사 외압 사건 수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도주대사’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음.

➔ 호주대사 인사 검증 및 임명 과정, 출국금지 해제 과정, 출국 과정, 급조된 공관장 회의를 빌미로 한 귀국 과정 등을 조사하여 의혹을 규명해야 함.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이종섭	-	주호주한국대사	호주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출국금지 사실 인지 여부, 인사 검증 경위	
윤석열	-	대통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경위	
복두규	-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이종섭 호주대사 인사 검증 경과와 임명 경위	
한동훈	-	(전) 법무부장관	이종섭 호주대사 인사 검증 경과와 임명 경위, 출국금지 관련 인지 여부	
박성재	-	(현) 법무부장관	이종섭 호주대사 인사 검증 경과와 임명 경위,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소집 경위 및 출국금지 해제 경과	법무부 인사검증, 출국금지 담당자 포함
조태열	-	외교부장관	이종섭 호주대사 인사 검증 경과와 임명 경위, 출국금지 사실 인지 여부, 공관장 회의 소집 경위	외교부 호주대사 임명 관련자 포함
김선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금지 경위 및 출국금지 해제 반대 의견 법무부 제출 경과	
송창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금지 경위 및 출국금지 해제 반대 의견 법무부 제출 경과	
차정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부 부부장검사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금지 경위 및 출국금지 해제 반대 의견 법무부 제출 경과	

24.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수사 미진

(1) 개요

-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23일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수사단 이첩 수사기록을 국방부검찰단이 무단 회수하는데 협조하거나, 또는 아무런 저지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음.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하였고 대구경찰청은 2023년 9월 1일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였음.
- ➔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대구경찰청은 고발인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지만 반복하며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몽개고 있어 그 경과와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은 현재 공수처에도 입건되어 있음.)

(2) 관련자

관련자	계급	직책 (당시)	확인 필요 사실	비고
김수영	치안감	(전) 대구경찰청장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고발 사건 관련 회의, 지시사항 및 외부 압력 유무	사건 수사 지휘 계통 포함
000	경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1팀 수사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고발 사건 관련 회의, 수명사항 및 외부 압력 유무, 수사 진행 경과	담당 수사관

[참고자료1]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방해 사건 관련자 134명

소속	이름	보직 ※ 2023.07.-08. 수사외압 당시 기준	특이사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박종현	↳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찰 파견
	주진우	법률비서관	현직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의구	부속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김형래	↳ 국가안보실 행정관	해병대 파견(대령)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박현수	국정상황실 행정관	경찰 파견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경호처	김용현	경호처장	현 국방장관 내정자
국방부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박진희	ㄴ 군사보좌관	
	유재은	ㄴ 법무관리관	
	000	ㄴ ㄴ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	
	이창민	ㄴ ㄴ 법무관리관실 총괄장교	
	전하규	대변인	
	허태근	정책실장	
	000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담당자	이종섭-김용원 전화 연결을 위한 실무 진행 담당자
국방부 조사본부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진락	수사단장	
	000	수사지도과장	
	000	수사군무사무관	
국방부 검찰단	김동혁	검찰단장	
	김민정	보통검찰부장	
	염보현	군검사	
	조태수	군검찰수사관	
	이찬묵	군검찰수사관	
합동참모본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주일석	전비태세검열실장	
	000	단편명령 발령 담당자	
해군	이종호	해군참모총장(~23.10.30.)	
	양용모	해군참모총장(23.10.31.~)	
	000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장	
해군 검찰단	고민숙	검찰단장	

	이성은	2보통검찰부장	
	000	2보통검찰부 검찰3과 군검사	
	000	2보통검찰부 검찰3과 군검사	
육군	신희현	2작전사령관	
	문병삼	50보병사단장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화동	↳ 사령관 비서실장	
	정종범	부사령관	
	이호종	해병대사령부 참모장	
	김태원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이윤세	공보정훈실장	
	문연철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최운영	1사단 행정부사단장	
	000	1사단 공보정훈실장	
	000	1사단 인사참모	
	000	1사단장 부관	
	000	1사단 소속 부서관	1사단장 7/31자 당일 소급 휴가 신청 실무 진행 관련자
	000	7여단 작전과장	
	000	7여단 주임원사	
	노재복	포병여단장	
	000	포병여단 작전과장	
	000	포병여단 군수과장	
	000	포병여단 포11대대 본부중대장	

	000	포병여단 포7대대 군수과장	
	000	1사단 포병여단 포3대대장	
	000	1사단 포병여단 포3대대 9중대장	
	000	수중수색 및 지원에 관여한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 장병	000 중위, 000 하사, 000 병장, 000 병장, 000 병장, 000 상병, 000 상병, 000 상병, 000 일병, 000 일병
	임성근	1사단장(소장)	최초 혐의대상자
	박상현	7여단장(대령진)	최초 혐의대상자
	이용민	포병여단 포7대대장(중령)	최초 혐의대상자 /조사본부 2명 이첩대상
	최진규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최초 혐의대상자 /조사본부 2명 이첩대상
	000	포병여단 포7대대 본부중대장(중위)	최초 혐의대상자
	000	정보과장(중위)	최초 혐의대상자
	000	부 소대장(상사)	최초 혐의대상자
	000	포병여단 포7대대 본부중대 수색조장(중사)	최초 혐의대상자
해병대수사단	박정훈	수사단장	
	000	1광역수사대장	
	000	1광역수사대 수사관	
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정철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경북경찰청	최주원	경북경찰청장(~24.02.04.)	
	김철문	경북경찰청장(24.02.05.~)	

	노규호	수사부장	
	이진식	강력범죄수사대장	
	000	강력범죄수사대 본부팀장	
	000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조사팀장	
	최문태	형사기동대장	
	김규은	형사기동대 수사관	
	임상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대구경찰청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000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 1팀 수사관	
공수처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차정현	수사4부 부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000,000	담당 검사 2명	
	000	검찰수사관	
정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23.12.20.)	
	박성재	법무부장관(24.2.20.~)	
	조태열	외교부장관	
국회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신원식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안보실장 지명)
	김병주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	
	성일종	국회 국방위 여당 위원	
	강대식	국회 국방위 여당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 군인권보호관	
	000	군인권보호국 군인권총괄과장	
	000	군인권보호관 비서	
	원민경	군인권보호위원	
	한석훈	군인권보호위원	
	000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멋쟁해병’ 단톡방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송호종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부장	
	최택용	사업가	
	최 모	경찰	
	김규현	변호사	
기타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	
	박철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권영환	육군사관학교장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 윤석열 연수원 동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용인병에 단수공천됨. 박은정 의원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고석이 선후배 사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이상훈	해병대전우회 총재	
	000	오마이뉴스 기자	장병 입수 장면 목격자

[참고자료2]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일지와 통신기록 (2023.7.19. ~ 8.)¹

1) 7월 19일 채 상병 사망 이후 ~ 7월 29일

- 채 상병이 사망 이틀 뒤부터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자료 요구가 시작됐다. 대통령실 안보실에 파견되어 있던 김형래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계획서를 요구했는데,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새로 수사계획서 문서 양식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실 측의 수사계획서 요청이 이례적인 일임을 보여준다.
- **7월 20일** : 윤석열 대통령,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힘.
- **7월 21일** : 김형래가 박정훈에게 수사계획서를 요구했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김형래에게 수사계획서를 메일로 발송함.
- **7월 28일**
 - 박정훈, 김계환과 채 상병 유족에게 수사 결과 보고함.
 - 김형래, 해병대 수사단 박 모 중수대장(중령)과 통화하여 조사 관련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자료 제공은 사령관 지침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함.

2) 7월 30일

- 해병대 수사단은 이종섭에게 임성근을 포함한 8명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종섭은 보고서에 직접 결재했다.
- 이후 대통령실은 수사결과보고서를 요구하였으나 박정훈이 이를 거절하였고, 김계환과 김형래 간의 통화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이메일로 언론 브리핑 자료를 송부했다. 김형래는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 하면 안된다’고 회신했다.

시간	발신인	수신인	통화시간	비고
14:18	김형래	권인태 해병대 정책실장		권인태는 김형래의 수사자료 요구를 받은 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필요하다면 국방부를 통해 받으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함.
16:30	해병대 수사단,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임성근 포함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			

¹ 아래 통화 내역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 사항과 관련한 통화를 정리한 것으로, 전체 통화 기록을 포괄하고 있지 않음.

결과 대면 보고 및 결재(김계환,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박진희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배석)				
17:16	김계환	임성근	3분17초	
17:19	임성근	김계환	1분6초	
17:30	박진희	김계환	2분41초	
17:39	박진희	임기훈	2분31초	
17:44	임기훈	박진희	2분 26초	
17:49	박진희	김계환	텔레그램	‘안보실에도 보고가 돼야 할 것 같다. 내일 아침엔 국방비서관에겐 인지가 되어야’
17:50	김계환	박진희	42초	
대통령실 안보실, 수사결과보고서 요구했지만 수사 중 사항이라는 이유로 박정훈이 거부함				
17:51	김계환	김형래		
17:59	김형래	김계환		
18:00	임기훈	김계환	29초	
18:15	김계환	임기훈	4분17초	
18:21	김형래 ↔ 김계환			
18:22	김계환, 박정훈에게 언론브리핑 자료 송부 지시함			
18:34	해병대수사단 유 모 소령	김형래	이메일	언론 브리핑 자료 송부
18:45	김형래	해병대수사단 유 모 소령	이메일 회신	김형래,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회신
19:02 ~19:43	박정훈 ↔ 김형래		통화 및 문자	박정훈, 브리핑 자료 안보실 사전 공유에 대한 우려감 표명

3) 7월 31일 : 해병대 수사단 언론브리핑 예정일/대통령실 수보회의

- 오전 11시,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가 진행되었고, 해당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때

‘VIP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계환을 통해 ‘VIP 격노’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온 바 있다.

- 오후 12시경 대통령실(02-800-7070, 대통령경호처 명의)에서 이종섭에게 전화한 이후, 언론브리핑과 국회 국방위 대면보고가 취소됐다. 이종섭은 오전 11시 경에 분리파견 명령으로 인사조치 되었던 임성근에 대해서 정상 근무를 지시했다. 임성근 인사조치가 취소되고 당일 소급하여 휴가처리되었다.
 - ⇒ 이종섭은 작년 국회 국방위·예결특위에서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 없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지난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는 당시 해병대 사건과 관련된 통화로 이해해서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날 임기훈(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 박진희(국방부 군사보좌관, 장관 보좌) →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통화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 윤석열 대통령의 ‘문고리’로 불리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임기훈과 당일 6차례에 통화했음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 또한 임성근의 휴가 처리와 관련해서도 임기훈 → 박진희 → 정종범(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이어지는 통화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오후 1시 30분경 이종섭은 유재은, 박진희, 정종섭 등과 ‘임성근 휴가처리’, ‘법적검토 결과’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내용은 정종섭 메모에서 확인된다. ‘잠정 8월 9일’이라고 적힌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복귀 예정일(8일) 다음날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건을 이첩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 ⇒ 국회 법사위 특검법 입법청문회(24.06.21.)에서 해당 메모 내용은 이종섭과 유재은이 발언한 내용을 정종섭이 정리한 것임이 확인됐다.
- 유재은이 박정훈에게 ‘수사대상을 직접적 과실이 있는자로 한정하라’는 취지로 전화했다(23.07.31.~08.01., 총 다섯 차례). 임기훈, 김계환, 박진희 간의 통화도 이어졌다.

시간	발신인	수신인	통화시간	비고
08:46	임기훈	강의구	3분39초	
09:51	강의구	임기훈	1분29초	
09:53	김계환	임기훈	1분55초	
10:50	박진희	김계환	1분18초	

11:00	대통령실, 윤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			
11:09	대통령 경호처 (02-800-7070)	조태용	31초	
11:14	김계환, 임성근에게 분리파견 명령 하달			
11:43	대통령 경호처 (02-800-7070)	주진우	44초	
11:54	대통령 경호처 (02-800-7070)	이종섭	2분48초	이종섭, 국회 국방위·예결특위에서 대통령실 통화한 적 없다고 답변한 바 있음
11:57 ~12:05	이종섭 (박진희 전화)	김계환	3차례 통화	언론브리핑 취소 및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주장 임성근 인사 조치 중단 지시
12:02	김계환	박정훈	1분52초	언론브리핑 취소 및 부대 복귀
12:18	김동혁	박진희	1분50초	
12:34	강의구	임기훈	4초	
12:46	임기훈	박진희	20초	
12:54	임성근, 당일 소급 휴가 신청(허가권자: 김계환)			
12:56	임기훈	강의구	2분54초	
13시 경	국방부, 언론브리핑 및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보고 취소			
13:24	박진희	임기훈	3분43초	
13:29	박진희	유재은	10초	
13:30	이종섭, 긴급 현안 회의 소집. 정종범 부사령관(14:15경 도착)을 국방부 집무실로 불러 임성근 휴가조치 등 지시(유재은, 박진희,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배석)			
13:32	김계환 ↔ 박진희			
13:36	강의구	임기훈	1분8초	
13:44	박진희	김화동	41초	
14:07	박진희	임기훈	3분7초	
14:29	박진희	임기훈	1분14초	
14:42	임기훈	박진희	1분32초	
14:47	이종섭	정종범	20초 가량	임성근 휴가 처리 재강조

	(박진희 전화)			
14:56	임기훈	이종섭	11분17초	
15:18	유재은	박정훈	13분41초	박정훈 ‘유재은이 수사대상 직접적 과실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
15:49	박진희	김계환	47초	
15:50	박진희	임기훈	33초	
16시경	김계환, 박정훈에게 이종섭 출장 복귀 후에 조사자료 보고 및 이첩 1차 지시했다고 주장 박정훈, 명확한 지시는 없었고 김계환에게서 VIP 격노 사실 전해들었다고 진술			
16:58	김계환	박정훈	45초	
17:00	김계환	임기훈	3분16초	임기훈, 국회 운영위에서 ‘7/31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 없다’ 증언한 바 있음
18:53 ~18:57	임기훈 ↔ 조태용·신범철		3차례 전화	
20:55	강의구	임기훈	1분7초	

4) 8월 1일

- 이종섭과 박진희는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으로 부재 중이었으나, 박진희가 김계환에게 ‘박 대령이 유 관리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를, 지휘 책임과 관련된 인원은 징계를 검토해 달라’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날 김계환은 박진희와의 문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된다’ 등 이첩에 대한 확신이 없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오후에 박정훈에게 이첩 보류를 최종 지시했다는 김계환의 주장보다, 김계환이 명확히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박정훈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박정훈은 이날 김계환을 통해 신범철의 문자(“차관 지시사항,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냐”, 신범철은 부인)를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박정훈은 사령관 직무실에 들어갔을 당시 김계환이 유재은과 막 통화를 끊은 시점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7/31~8/1 이틀 동안 박정훈 대령과 다섯차례 통화했다. 유재은과 박정훈의 진술에 따르면, 통화 중에 유재은은 ‘혐의사실 특정하지 않고 기록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유재은 진술)/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박정훈 진술)’,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시냐(공통 진술)', '이첩 시기는 장관 귀국 이후로(박정훈 진술 / 유재은은 '지시' 아닌 '안내'였다고 진술)' 등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정훈 대령은 이날 김계환과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등이 배석한 해병대 간부회의에서 혐의자 변경에 따른 직권남용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시간	발신인	수신인	통화시간	비고
07:40	임성근 ↔ 김계환		2분33초	
09:09	임성근 ↔ 김계환		1분25초	
09:13	박정훈	유재은	통화 1회	사건인계서 발송 사실 알림
09:14 09:45	해병대 수사단	유재은 등	메일 2통	사건인계서, 사건기록목록 발송
09:42	박정훈 ↔ 유재은		통화 2회	박정훈, 유재은이 '직접적 과실 있는 사람으로 혐의 한정'하라고 발언했다고 주장
09:47	신원식 ↔ 이종섭		통화 1회	
10:17	김계환 ↔ 박진희		문자	박진희, "유족 측에 언제쯤 수사결과를 이첩한다고 했느냐. 조만간 이첩이 어려워 보인다" 김계환 "계획된 것은 내일 오전 10시다. 조만간 이첩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된다"
10:21	강대식 ↔ 이종섭		문자 3회	
10:26	김계환 ↔ 박진희		문자	박진희, '지난번 보고가 중간보고이고, 이첩 전 최종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김계환, '위험성 많은 부분이라 법무관리관과 수사단장(박정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39	김계환 ↔ 박진희		문자3회	박진희, '수사단장은 법무관리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도 검토해달라' 등 문자
11:24	임기훈	강의구	2분23초	
14:42	임기훈	박진희	1분32초	
15:29	김계환 ↔ 박진희			김계환, '이첩 시기는 이종섭 장관 귀국 후에 지침을 받고 (결정)하겠다'
15:37	임기훈 ↔ 김계환		4분45초	

16:07	유재은	박정훈	통화 1회	유재은, '혐의자 및 혐의사실 제외하라' 스피커폰으로 해병대 수사단 청취
16:09	김계환 ↔ 박진희		문자	김계환, '모든 사람들이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을 알기에 조심하고 있다'
16:30경	김계환, 회의 통해 박정훈에게 경찰 이첩 보류 최종 지시했다고 주장 박정훈, 김계환이 명확한 하나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			

5) 8월 2일 (이첩 당일)

- 해병대 수사단이 예정대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10:30~11:50). 하지만 김계환은 참모 논의 후, 박정훈에게 이첩 종단을 지시했다(10:51). 박정훈, 김계환 등이 해병대 수사단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이첩이 진행됐다.
- 김계환은 박진희에게 연락해 이첩 사실을 알렸다(11:13). 이첩 사실을 보고 받은 이종섭은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는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기록을 무단 회수했다. 이때 윤석열이 이종섭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12:07)이 알려지면서,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이종섭이 수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종섭은 통화 이전에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경찰 간의 통화 기록이 다수 확인되었다. ▲ 경찰을 향해서는 대통령실에 파견되어 있던 박 모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에게, 국가수사본부가 경북경찰청(노규호)에게 전화했고, ▲ 국방부를 향해서는 임기훈·이시원이 신범철·유재은에게 전화했다.
- 결과적으로 임기훈이 유재은에게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유재은과 노규호 간 사건기록 무단 회수와 관련한 통화가 이뤄졌고, 결국 사건기록은 회수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휴가 첫날인 윤석열과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갔던 이종섭 사이에서 세 차례(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총 18분간의 통화가 있었다.
- 사건기록 회수 이후 해병대 수사단 소속 A 수사관은 경북경찰청 강력수사대 B팀장에게 전화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기록 인계가 아닌 자료 제공을 받았다'고 입장 표명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이첩 과정에서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외압의 가능성을 경북경찰청에 이미 언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후 경북경찰청은 접수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가 회수를 요청해 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간	발신인	수신인	통화시간	비고
10:00	박정훈	김계환	보고	수사결과 이첩 위해 해병대 수사단 출발시켰다고 보고. 박정훈은 김계환이 '중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문자 '직권남용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주장함.
10:30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에 이첩 시작			
	김계환, 김화동·이윤세(해병대 공보정훈실장) 등 참모들과 논의			
10:51	김계환	박정훈	통화	해병대 수사단에게 인계 중단 전화할 것을 지시함. 박정훈, 김계환 등이 연락 시도했으나 받지 않음.
11:13	김계환	박진희	2분32초	이종섭에게 이첩 사실 보고함.
11:13	이종섭	군검찰단	지시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지시함.
11:17	김화동	박정훈	42초	
11:20	김계환	박진희	1분9초	
11:23	임기훈	조태용	19초	
11:27	김계환	신범철	1분58초	
11:29	신범철	임기훈	36초	
11:33	신범철 ↔ 조태용		1분24초	
11:39	유재은	박진희	2분52초	
11:43	김계환	박진희	문자	
11:45	조태용	이종섭	문자	
11:46	유재은	김계환	2분38초	
11:49	김계환	김화동	33초	
11:49	조태용	이종섭	2분40초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 첫 통화
11:50	이첩 마무리 / 총 14회(전화 12회, 문자 2회)			
11:51	유재은	박진희	34초	
11:51	유재은	김계환	22초	
11:52	조태용	임기훈	2분6초	

11:52	박진희	김계환	문자	“스님께서 통화 원하십니다. 나중에 이첩하는 것으로 정확히 전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11:54	박정훈	김화동	3분4초	
11:59	김화동	박정훈	20초	
12:00	조태용	임기훈	35초	
12:01	신범철 ↔ 조태용		1분여	
12:04	김계환	이종섭	3분6초	
12:07	조태용	임기훈	55초	
12:07	윤석열	이종섭	4분5초	대통령-국방부장관 첫 통화
12:14	임기훈	이시원	44초	
12:15	신범철 ↔ 임기훈		10초	
12:20	조태용	임기훈	4분8초	
12:20	공직기강비서관실 박모 행정관(경찰 파견), 국수본 이 과장에 연락			
12:28	조태용	임기훈	35초	
12:28 12:42	박진희	김계환	텔레그램	사건 이첩 여부와 임성근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물음
12:29	임기훈	이시원	36초	
12:32	이시원	임기훈	문자	
12:39	임기훈	이시원	문자	
12:40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노규호 수사부장에게 ‘국방부가 사건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밝힘			
12:43	윤석열	이종섭	13분43초	
12:45	해병대사령부(김계환), 박정훈 보직해임 통보 / 총 20회(전화 16회, 문자 4회)			
12:48	이시원	임기훈	1분47초	
12:50	임종득	김계환	4분41초	
12:54	이시원	신범철	문자	

12:57	윤석열	이종섭	52초	
13:03	김계환	유재은	1분6초	
13:21	이시원	임기훈	40초	
13:25	윤석열	임기훈	4분51초	
13:26	김형래 ↔ 김화동		통화	
13:29	신범철 ↔ 이시원		통화	
13:30	신범철	윤석열	8분45초	
13:42	유재은	이시원	문자	
13:42	임기훈	유재은	2분12초	유재은 “임기훈이 경찰에서 전화 올거라고 해”
13:42	유재은	임기훈	문자	
13:51	유재은	노규호	3분 이상	무단 회수 취지 연락
13:54	신범철 ↔ 임기훈		14초	
14:40	이종섭 지시로 국방부 군검찰단 기록 회수 회의 진행 / 총 15회(전화 12회, 문자 3회)			
14:57	유재은	신범철	1분1초	
15:01	이시원	임기훈	1분6초	
15:02	임기훈	임종득	30초	
15:17	임기훈	이시원	54초	
15:34	이종섭 ↔ 한덕수		통화	
15:36	김계환	유재은	3분15초	
15:40	신범철	윤석열	3분36초	
15:40	이시원	임기훈	1분37초	
15:56	임종득	김계환	4분41초	
16:16	이시원	신범철	1분18초	
16:19	이시원	신범철	1분	

16:21	윤석열	신범철	10초	신범철 “대통령과 회수 내용으로 통화했다”
16:45	유재은	이시원	문자	
16:45	이시원	유재은	문자	
16:46	유재은	이시원	2분46초	
16:59	대통령실 (02-800-)	유재은	2분39초	이종섭에게 전화한 번호와는 다른 번호임
17:00	조태용	임기훈	1분20초	
17:20	이시원	임기훈	1분28초	
17:29	임기훈	이시원	1분36초	
17:38	박정훈	김화동	44초	
17:55	이시원	유재은	6분41초	
19:15	박정훈	김화동	1분33초	
19:20	국방부 검찰단, 경북경찰청서 기록 회수 / 총 21회 (전화 19회, 문자 2회)			
19:37	박정훈	김화동	1분46초	
20:14	김화동	박정훈	44초	
20:56	김화동	박정훈	1분20초	
21:08	임기훈	임종득	12초	
22:17	임기훈	김계환	3분49초	

6) 8월 3일

-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했다. 전후로 박진희가 김동혁, 유재은은 물론 임기훈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정훈이 수사 받는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압수수색 이후 박진희가 유재은과 통화하고, 유재은과 이시원이 통화하고, 다시 박진희가 유재은과 통화한 흐름이 드러났고, 이날 유재은은 이시원에게 대면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4년 1월까지 유재은-이시원 대면보고는 10여 차례 이뤄졌다.

- 해병대 수사단 A 수사관은 압수수색 이후 재차 경북경찰청 강력수사대 B팀장에게 통화하여 철저한 수사를 호소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이에 B팀장은 울며 미안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시간	발신인	수신인	통화시간	비고
10:46~	이종섭 ↔ 방문규		문자 1회 통화 3회	
13:16	김화동	박진희	2분7초	
13:36~	박진희	김동혁	3차례 통화	
14:31	임기훈	박진희	4분47초	
14:45	고석	이종섭	27초	
16시경	국방부 검찰단,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 압수수색하고 박정훈 대령 조사			
16:18~ 17:49	박진희	유재은	2차례 통화	
17:55	이시원 ↔ 유재은		6분 이상	
18:07	유재은 ↔ 박진희		2차례 통화	
21:20	이종섭	박진희	58초	

7) 8월 4일

- 이종섭이 출장에서 복귀한 다음날, 임기훈은 이날 오전 9시 51분 이전부터 오후 6시 이후까지 국방부 청사를 최소 네차례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종섭, 박진희, 신범철의 집무실 등이 위치한 국방부 청사 3층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대통령실과 국방부 차원의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회의에는 김동혁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기훈이 국방부 청사에 머무는 동안 이시원과 최소 3차례 통화했고, 가장 긴 통화는 12분에 달함. 박정훈 수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이날도 임기훈(대통령실) → 박진희(국방부) → 유재은으로 이어지는 통화(15:08~)가 관측되어 대통령실의 의중을 유재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박진희가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4일부터 7일까지 이종섭과 김용현 간의 통화·문자가 최소 8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이 직접 연락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김용현 38기, 이종섭 40기) 이종섭의 장관 부임 전부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상민과 이종섭 간의 통화·문자도 같은 기간 최소 9차례 있었는데,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잼버리 현장 수습과 관련해 군 부대 지원 요청 등 협조 요청을 위해 국무위원들과 많은 통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라는 점에서, 채 상병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간	발신인	수신인	통화시간	비고
07:59 ~08:11	임기훈	신범철	문자 3회	
09:16	임기훈	이시원	2분25초	
09:35~42	이종섭 ↔ 임기훈		통화 2회	
09:47	대통령실 (02-800-)	임기훈	3분30초	이종섭에게 전화한 번호와는 다른 번호임
09:51	임기훈, 국방부 청사에서 나감(1회)			
10:20	김용현	이종섭	통화 2회	
10:22	이종섭	이상민	35초	
10:30	이종섭	임종득	통화 1회	
12:17	이종섭 ↔ 임기훈		36초	
13:00	이종섭 ↔ 신원식		통화 5회	
13:25~49	박진희	유재은	통화 2회	
15:08	박진희	임기훈	4초	
15:31~55	박진희 ↔ 유재은		통화 4회	
16:05	임기훈	박진희	1분12초	
16:29	임기훈, 국방부 청사에서 나감(2회)			
17:14	임기훈, 국방부 청사로 들어옴(3회)			

17:41	임기훈	박진희	37초	
17:20	임기훈 ↔ 이시원		12분	
17:34	임기훈 ↔ 이시원		2분13초	
18:10	박진희	임기훈	4초	
18:20	임기훈, 국방부 청사에서 나감			
18:32	임기훈, 국방부 청사로 들어옴(4회)			
18:36	박진희	유재은	4분35초	
19:06	박진희	김동혁	35초	

8) 8월 5일

시간	발신인	수신인	통화시간	비고
10:13	김용현	이종섭	문자 1회	
10:15	이종섭	이상민	문자 1회	
10:16	이종섭	김용현	11초	
10:28	이상민	이종섭	1분32초	
10:34	이종섭	김용현	20초	
10:56	이종섭	김용현	3분54초	
13:42	이종섭	신원식	통화 1회	

9) 8월 6일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군사경찰이 재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	발신인	수신인	통화시간	비고
08:16	이상민	이종섭	1분53초	
09:30	이상민	이종섭	3분8초	

09:36~37	이종섭 ↔ 이상민		문자 2회	
10:08	김동혁	임기훈	6분10초	
11:17	임기훈	박진희	1분1초	
16:53 17:01	박진희 ↔ 김동혁		통화 2회	
21:08	이종섭 ↔ 한덕수		통화 2회	

10) 8월 7일

- 유재은과 김동혁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재차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군 검찰단이 재검토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며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신범철은 다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장관이 지시해도 재검토를 거절할 것이냐”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	발신인	수신인	통화시간	비고
09:13	이종섭	이상민	1분48초	
10:20	유재은	박진희	6분16초	
10:21	이종섭 ↔ 신원식		통화 5회	
10:58	임기훈	박진희	통화 4회	
16:01	임기훈	강의구	2분23초	
19:26	이종섭 ↔ 김용현		18초	
20:23	이종섭 ↔ 김용현		6초	
22:16	이종섭 ↔ 성일종		통화 2회	

11) 8월 8일

-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지시 전달로, 이날 법무관리관실에서 이종섭에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에 송부하는 것이 적절’,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는 미흡하고, 수사단장이 항명죄 수사를 받고 있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 문건(“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송부)을 올렸다.

- 오전 7시 55분 윤석열과 이종섭이 통화한 이후 임기훈이 이시원, 박진희, 김동혁과 통화했고, 하루 동안 박진희와 김형래 간에 최소 13차례 연락이 오갔다. 이후 박진희가 김계환, 박경훈, 김동혁과 통화하면서 대통령실 → 국방부 → 조사본부·해병대로 이어지는 통화 흐름이 나타났다.
- 한편 이날 오전, 해병대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 정종범)를 열고 박정훈을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 했다.

시간	발신인	수신인	통화시간	비고
07:55	윤석열	이종섭	33초	
08:19	임기훈 ↔ 이시원		4분 이상	
08:30 ~09:01	임기훈 ↔ 박진희		통화 3회	
08:59	박진희 ↔ 김형래		1분 이상	
09:29	이시원 ↔ 유재은		3분여	
09:34	이종섭	신원식	통화 1회	
10:08	김동혁	임기훈	6분10초	
13:55	박진희	신범철	9초	
14:07~10	박진희	유재은	통화 2회	
15:29	박진희 ↔ 김형래		문자 3회	
15:51	박진희	박경훈	24초	
16:23~53	박진희 ↔ 김형래		연락 7회	
16:47	박진희	박경훈	29초	
18:34	박진희	김계환	21초	
21:38	김계환	박진희	49초	
21:39	김동혁	박진희	4분16초	

21:42	김태효	이종섭	통화 1회	
-------	-----	-----	-------	--

12) 8월 9일

- 이종섭은 채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집무실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들과 함께 유재은과 김동혁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측은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도 될지 물었으나, 이종섭은 기록만 재검토하라며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은은 전날(8일) 장관에게 보고했던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문건을 이날 조사본부에 전달했다.
- 이첩 당일인 8월 2일부터 이날(8/9) 사이 이시원과 임기훈은 15차례, 이시원과 유재은은 5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기간 동안인 8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도 이시원과 유재은은 11통의 전화 통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박정훈 대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 하고, 이첩 전까지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관리관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블랙펠인베스트 이종호 대표·송호정 전 청와대 경호부장과 통화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통화 녹취록을 공개(2024.7.9., 7.16.)하고, 이들이 임성근에게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이종호)’, ‘전혀 사표라든지 이런 건 내지 말아라, 사의 표명을 하지 말아라(송호정)’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공수처에 공익제보했다.

시간	발신인	수신인	통화시간	비고
08:24	임기훈	박진희	2분41초	
08:35	임기훈 ↔ 이시원		6분 이상	
10:00	임기훈	박진희	1분28초	
10:12	박진희	김화동	3분31초	
10:19	박진희	임기훈	49초	

13:42	박진희	임기훈	2분50초	
14:15	박진희	신범철	문자	
16:30	박진희	임기훈	26초	
16:38	박진희 ↔ 김동혁		통화	
16:43	박진희	김동혁	1분3초	
16:45	박진희	유재은	1분7초	
16:46	유재은	박진희	1분46초	
17:39	유재은	박진희	1분48초	
19:52	임기훈	박진희	1분37초	

13) 8월 11일

-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
-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수사를 앞두고,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2023.10.06).

14) 8월 14일

-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을 포함한 초기 보고서 “[고 채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을 작성했다. 혐의자로는 임성근을 포함한 6명을 구체적 혐의와 함께 적시했다(해병대 수사단이 적시한 8명 중 말단 간부 2명 제외). 해당 보고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인계서보다 더 자세하고 광범위한 임성근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방부 조사본부는 위 결과를 통보하며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장관(군사법정책담당관), 국방부 검찰단장(공공형사과장) 앞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종섭 장관은 20일 전까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공문도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해당 보고서가 나올 당시 유재은과 김동혁이 최소 한 번 통화했고, 이날(8/14)부터 8월 17일까지 이시원과 유재은 간 최소 2번의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관들은 참고인으로 전환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관들이 단순히 박정훈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고, 판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대령은 군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 한편, 이종섭은 이날 국가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과 통화하였는데, 김용원은 이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원래 내용대로 경북경찰청에 즉각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섭은 수사대상자 중 하급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하여 반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때 임성근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하급간부 2명을 제외하여 이첩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보고서와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5) 8월 15일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의견 요청 공문에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문건을 8/14 생산하여 다음날(8/15) 회신했다. 1사단장과 7여단장의 경우 과실이 있다면서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관련자로 기재한 뒤 통보하라는 처리 방향을 제시했다.
- 국방부 검찰단도 8/15에 국방부 조사본부의 의견 요청 공문에 회신했다. 해당 내용은 국방부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의 “[참고6] 유관기관(국.법무관리관실, 국.검찰단) 의견 (요약)”에 담겼다. 사단장을 포함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과실은 인정된다고 보이나,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관여 정도 등에 대해 판단이 제한되므로 관련자 등으로 사건기록과 함께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였다.

16) 8월 17일

- 이종섭 장관은 박경훈 등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들과 유재은, 김동혁을 불러 연석회의를 열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임성근을 포함한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지만, 유재은·김동혁 등은 ‘처벌 대상인지 판단을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야 한다’, ‘2명만 처벌 대상이 확실하다’며 처벌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위 회의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서 혐의자가 6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고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진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17) 8월 20일

-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종 보고서(해병대 사망 건 재검토 결과)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적시한 8명 중 2명에 대해서만 범죄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고, 임성근 등 4인(하급간부 2인 제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임성근을 포함한 6명을 혐의자로 적시한 중간 보고서와 크게 달라진 결과다.
- 8월 18일부터 이날(20일)까지 유재은과 이시원 간에 최소 두 차례의 통화가 있었고, 유재은은 김동혁과도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직후 최소 한 번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8) 8월 21일 이후

- 국방부 조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공문을 반송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수사 결과를 이첩 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은 공문 반송 이후, 해당 사건을 재이첩했지만 경북경찰청은 이를 재반송했다.
- **8월 21일** : 국방부 조사본부,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변사사건 사건 인계 관련 의견 요청’ 공문 발송.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받은 이첩 공문 반송하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이 담김.
- **8월 23일** : 경북경찰청, 해병대수사단에서 8/2 이첩한 사건 및 공문 반송. 이전까지 공문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짐.
 -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해당 공문 어떻게 처리할 지 국방부와 군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고, 한달 뒤에 회신이 온 내용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힘.
- **8월 24일** : 국방부 조사본부, 재수사 결과 경북경찰청에 이첩
- **8월 25일** : 경북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수사결과 이첩 사건 접수
- **8월 29일** :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이 반송한 사건 재이첩
- **9월 5일** : 경북경찰청, 해병대 수사단이 재이첩한 사건 재반송

[참고자료3] 말바꾸기 및 진술 불일치 정리

1. 말바꾸기

1) 대통령실, ‘채 상병 사망사건’ 보고 및 ‘격노’ 부인

- **‘VIP 격노설’ 제기** : 언론보도(2023.08.27.)를 통해 공개된 ‘해병대사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행경과’ 문건(박정훈 대령 작성)에서 대통령이 경찰 이첩 예정 보고를 받고 격노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는 내용을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해들었다고 언급됨. 이후 박정훈 대령이 군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김계환 사령관에게서 ‘VIP 격노’를 전해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됨.
- **대통령실, ‘채 상병 사망사건’ 보고 부인** : 작년 국회 운영위(2023.08.30.)에서 “이 사건(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재차 이어진 질문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라고 답했고, “안보실의 업무는 대통령이 국정 전체를 보좌하도록 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디테일을 파악하실 만큼 한가하신 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다.
- **공수처, 김계환-해병대 간부 대화 녹음 및 ‘격노설 전해 들었다’는 진술 확보** : 공수처가 확보한 통화 녹음에는 김계환 사령관과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설’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해병대 간부는 공수처에 ‘김계환이 윤 대통령 격노설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 **대통령실, ‘채 상병 사망사건’ 보고 부인 반복, ‘격노’ 인정**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2024.06.)에서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야단’을 쳤다고 발언했다. “처음 사고 났을 때 한번 야단 맞았고, 그 다음에 박정훈이 수사한다는 것을 국방비서관이 보고해서 지적을 또 받은 것”, “해병대가 오버했다. 박정훈이 야단을 자초했다”, “이첩했던 것을 찾아다가 국방부 장관이 (추가로 수사할 사항들을) 추가해서 보냈다”,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 친 게 아니겠느냐” 등과 같이 말했다.

- **대통령실, ‘격노’ 부인** : 올해 국회 운영위(2024.07.01.)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 같은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발언했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라고 발언했다.

2) 임성근 수중 수색 부인

- **임성근 수중 수색 부인** :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소환조사를 할 당시(2024.05.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2024.06.21.) 등에서 임성근은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은 수중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임성근 수중 수색 지시 정황** : 포3대대에서 촬영된 것으로 예천 지역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신속대응부대에서 이미 사건 발생 전날인 7월 18일부터 수중 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진들이 존재한다. 포3대대에서 수중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을 7월 19일 오전에 1사단 공보정훈실장의 카카오톡 보고했다.
- **임성근 수중 수색 부인 번복** : 임성근은 해병대수사단의 변사사건수사 당시 초기 진술에서는 사진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사진 보고를 받은 사실이 물증으로 확인되자 ‘수중수색 금지 지시를 강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하들이 수중수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을 바꿨다.

3) 임성근, 채 상병 사망 사고 보고 시점 거짓말 논란

- 임성근은 올해 국회 법사위(2024.06.21.)에서 “채 해병이 물에서, 물 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게 실종 사고 이후 19시 간에 알았고, 실종 사고가 난 시간은 09시 04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 청문회에서 채상병의 죽음을 저녁에야 알았다고 했지만 사고 직후인 아침 9시 반에 보고 받은 기록이 있어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기록은 다음과 같다.
[임성근/1사단장 (7월 19일 (사고당일)9:20)] “왜 빠졌냐고”
[이용민/포7대대장 (7월 19일 (사고당일)9:20)] “지반이 무너지면서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임성근/1사단장 (7월 19일 (사고당일)9:20)]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4) 이종섭 국방장관, 대통령실과 통화 부인

- 이종섭은 작년 국회 국방위(2023.08.21.)·예결특위(2023.09.04.)에서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 없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는 당시 해병대 사건과 관련된 통화로 이해해서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8월 2일 사건기록이 회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휴가 첫날인 윤석열과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갔던 이종섭 사이에서 세 차례(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총 18분간의 통화가 있었다.

날짜	시간	발신인	수신인	통화시간
7월 31일	11:54	대통령실 (02-800-7070)	이종섭	2분48초
8월 2일	12:07	윤석열	이종섭	4분5초
8월 2일	12:43	윤석열	이종섭	13분43초
8월 2일	12:57	윤석열	이종섭	52초
8월 8일	07:55	윤석열	이종섭	33초

5) 임기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통화 부인

- 임기훈, 국회 운영위(2023.08.30.)에서 ‘7/31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 없다’ 증언했다.
-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통화 내역에 따르면 적어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4차례 통화한 것이 드러났다.

날짜	시간	발신인	수신인	통화시간
7월 30일	18:00	임기훈	김계환	29초
7월 31일	09:53	김계환	임기훈	1분55초
	17:00	김계환	임기훈	3분16초
8월 1일	15:37	임기훈 ↔ 김계환		4분45초

6)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건 기록 무단 회수 관련 뒷선 개입 부인

- **유재은, 무단 회수가 국방부 검찰단 자체 판단이라고 주장** : 작년 국회 법사위(2023.08.21.)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무단 회수가 누구의 지시냐는 질의에 유재은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관 등 윗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 무단 회수 관련 유재은과 협의했다고 밝힘** : 언론보도(2024.04.25.)를 통해 무단 회수 당일(8/2)와 관련해 유재은과 사건 기록을 가져오는 방식과 주체, 시기까지 협의했다는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의 증언이 알려졌다. 실제로 당일 13시 51분 유재은은 노규호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오히려 14시 40분에 이르러서야 군검찰단 기록 회수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노규화와 통화 전 유재은이 임기훈 등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했고, 국가수사본부 이정철 과장에게 대통령실에 파견되어 있던 박현수 행정관(경찰)이 전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 **유재은, ‘제가 회수하겠다고 그랬다’고 증언** : 올해 국회 법사위(2024.06.21.)에서 경북경찰청과 통화 당시 회수할 것인지 묻는 말에 ‘제가 회수하겠다고 그랬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검찰단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고, 회의석상에 검찰단장이 같이 있어 ‘증거물로 회수 가능하지 않냐를 물어봤고 검찰단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후속조치는 검찰단에서 알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임기훈과의 통화에서는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안내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7) 신원식 의원,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 부인

- 작년 국회 국방위(2023.8.21.)에서 여당 간사였던 신원식 의원은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방해될까봐 안 했다”고 발언했고, 이에 이종섭 장관도 “그렇다”고 답했다.
-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신원식과 이종섭 간의 통화가 수차례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에 2024년 6월, 국방부장관이 된 신원식은 입장문을 통해 채 상병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통화한 사실은 없고, 국방 현안에 관해 평소처럼 통화했다고 해명했다.

날짜	시간	발신인	수신인	통화시간
8월 1일	09:47	신원식 ↔ 이종섭		통화 1회
8월 4일	13:00	이종섭 ↔ 신원식		통화 5회

8월 5일	13:42	이종섭	신원식	통화 1회
8월 7일	10:21	이종섭 ↔ 신원식		통화 5회
8월 8일	09:34	이종섭	신원식	통화 1회

2. 진술 불일치

1) 김계환-박정훈

- 7월 31일 김계환, 박정훈에게 이종섭 출장 복귀 후에 조사자료 보고 및 이첩 1차 지시했다고 주장
- 박정훈, 명확한 지시는 없었고 김계환에게서 VIP 격노 사실 전해들었다고 진술
- 8월 1일 김계환, 회의 통해 박정훈에게 경찰 이첩 보류 최종 지시했다고 주장

2) 박정훈-신범철

- 박정훈은 이날 김계환을 통해 신범철의 문자(“차관 지시사항,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냐”, 신범철은 부인)를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3) 박정훈-유재은

-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7/31~8/1 이틀 동안 박정훈 대령과 다섯차례 통화했다. 이때 ‘혐의사실 특정하지 않고 기록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유재은 진술)/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박정훈 진술)’,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시냐’, ‘이첩 시기는 장관 귀국 이후로(유재은은 ‘지시’ 아닌 ‘안내’였다고 진술)’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박정훈 대령은 유재은의 해당 발언을 외압으로 받아들였지만, 유재은은 이를 외압이 아닌 안내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4]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관계자들의 법적책임에 대한 검토

1. 대통령 등 수사외압 관계자들의 법적책임

가. 주요 혐의

- 질책(격노) 등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대상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행위
- 해병대 수사단의 적법한 이첩을 보류시키고, 이첩기록을 회수하는 등 지시한 행위
-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한국대사로 임명한 행위
- 이종호 등 관계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등을 요청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개입한 행위

나. 법적쟁점의 검토

1) 비신분자에게도 직권남용죄는 성립가능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 뿐만 아니라 비공무원(비신분자)에게도 공동정범으로 성립할 수 있음(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 즉 이종호 등 관계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에게 구명을 요청하여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방해행위에 개입했다면 이들에게 직권남용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고, 따라서 이종호 등 관계자들의 구명요청행위가 조사될 필요성이 있음

<참고> 비신분자 관련 참고판례

유죄 사례	시사점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등이 하급자에게 내사중단 및 이첩지시를 한 행위(대법원 2008도7312)	비신분자인 이종호 등 관계자가 다른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구명요청 등을 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음

2)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음

- 일반적 직무권한이란 1)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2) 없더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사실상 의무없는 일을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각 부처에 대한 지시, 협조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적 직무권한으로서 가지고 있고, 수사결과에 개입하는 취지의 지시 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일반적 직무권한의 행사에 해당함
- 권한이 남용되었는지는 목적, 필요성 및 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데, 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특정 내사를 보류 및 종결시키거나, 이첩을 하도록 하는 행위 등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한 경우라고 판단하였음

<참고> 대통령실의 일반적 직무권한 관련 참고판례

유죄 사례	시사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대통령 근친에게 임대한 행위(대법원 92도116)	각 부처에 대한 지시, 협조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민정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인정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대출을 지시한 행위(서울지법 2003고합580)	각 부처에 대한 지시, 협조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인정
대통령비서실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하게 한 행위(대법원 2008도6950)	각 부처에 대한 지시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인정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공정위 심사관에게 고발의견 진술을 강요한 행위(서울중앙지법 2017고합365,732)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 직무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인정

3) 인사상 조치 또한 “일반적 직무권한의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법원은 인사권, 인사관리에 관한 일반적 권한을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보고 있고,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지시한 경우 직권남용행위로 판단하고 있음
- 대통령이 개입하여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임성근 전 사단장의 파견을 취소하고 휴가로 처리한다든지, 수사대상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그 목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음
- 따라서 임성근의 파견취소, 휴가처리,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과정 등에 대통령실의 개입정황 등이 세부적으로 조사될 필요성이 있음

<참고> 인사권 남용에 관한 유죄사례

유죄 사례	시사점
서울시 교육감이 특정 공무원 승진 목적으로 지시를 한 행위(대법원 2010도13766)	인사권의 남용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용인시장 및 행정과장이 특정 공무원에 대한 평정순위를 변경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10도11884)	인사관리에 관한 일반적 권한을 남용한 것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4) 해병대 수사팀의 수사, 이첩 등에 대한 개입은 수사권의 침해에 해당함

- 일각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적용되는 범죄가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이기 때문에 일반 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해병대 수사팀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이 있음
-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관할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개시를 할 수 있음. 즉 ‘이첩단계’ 이전까지의 수사행위는 해병대 수사단의 권한행사이고, 해병대 수사단이 범죄를 인지 후 이첩하면 되는 구조임. 이첩시 첨부하는 인지통보서에도 피의자, 죄명, 범죄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해병대 수사관에게 수사권이 없으므로 이첩을 보류시키고, 기록을 회수시킨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참고> 수사권, 이첩에 관한 유죄사례

유죄 사례	시사점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수사기밀을 보고하게 한 행위(대법원 2011도1739)	사법처리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하고, 보고하도록 한 것을 남용행위로 인정한 사례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등이 하급자에게 내사중단 및 이첩지시를 한 행위(대법원 2008도7312)	개별 경찰에게 구체적 수사권 발생을 인정하고 수사권 방해를 인정한 사례
검찰 고위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종결토록 지시한 행위(대법원 2004도5561)	구체적 발언이 없더라도 내사중단지시로 평가할 수 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판례

5) 대통령의 질책은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함

-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지적하면서 질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바로잡으라”라는 지시를 하였음. 이는 단순 질책이 아니라 수사결과를 수정하라는 지시에 해당함
- 법원은 대통령실의 포괄적 지시(질책)도 결국 ‘일련의 부당한 대응조치’를 취하라는 의미가 담긴 이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이로 인해 기자브리핑의 취소, 수사결과의 변경, 이첩보류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것이자 수사단의 수사권을 침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참고> 포괄적 지시에 관한 유죄 사례

유죄 사례	시사점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하라는 포괄적 지시를 직권남용죄로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0도18296)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하라는 포괄적 지시도 일반적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검찰 고위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종결토록 지시한 행위(대법원 2004도5561)	내사 진행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였을 뿐이더라도 내사진행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중단지시로 본 사례

2.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법적책임

가. 주요혐의

-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 질책하면서 무리한 실종자수색을 지시한 행위
- 구명조끼 미준비 등 안전대책의 마련 없이 수색을 강요한 행위 등

나. 법적쟁점의 검토

1) (직권남용죄 관련) 임 전 사단장의 지시 등은 ‘월권행위’가 아님

-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작전 관련 지시한 행위가 ‘월권행위’이고 따라서 ‘일반적 직무권한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음
- 그러나 일반적 직무권한이란 1)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2) 없더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사실상 의무없는 일을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단장은 사단의 지휘관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사단을 지휘 감독할 일반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유지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지시가 월권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한 경북경찰청의 판단은 부당함.
- 위와 관련하여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특수성,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참고해볼 수 있음(대법원 2021도2748)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구체적 주의의무가 존재함

-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았음.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사전위험성 평가의무’ 등 안정장비 구비 및 안전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다수의 사안에서 지휘권 또는 감독권을 지닌 사람에게 관리 감독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57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40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현장

경찰의 시위 진압을 통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 최종지휘권자인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현장 지휘관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것 역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았음(대법원 2023. 4. 23. 선고 2019도12195 판결).

-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수변으로 내려가 장화를 신고 수색을 실시하라’ 등 세부적인 지시를 하였고, 부대 출동 이후 ‘실종자 수색업무’를 우선순위로 실시할 것을 하급자들에게 지휘하였음.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는 사단장으로서 현장 지휘관이 무리한 수색지시를 하지 않은지 감독의무가 있는데, 현장 지휘관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한 것 외에 특별히 안전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즉 현장지휘책임자에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이를 감독해야 할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도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음.

3) 보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관련

-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수사대상에 포함한 것은 기존 법원이 형성하고 있는 판례와 관련 범죄의 법리에 비추어봤을 때 지극히 타당함.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법리해석과 사실관계의 해석에 따라 범죄성립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수사결과이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대통령실, 여권 인사 등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24대 의혹 및 관계자 134명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

발행일 2024. 08. 14.

발행처

군인권센터 02-733-7119 mhrk@mhrk.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mjc@minbyun.or.k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